

행정기관

# 2024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중점 추진과제

2024. 2.



국민권익위원회



# 2024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과제 전달회의 개최 계획

## □ 추진 배경

- '24년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방향과 중점 착안사항을 각급 기관과 공유하여 부패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범정부적 동력 확보

## □ 행사 개요

- 일시 : '24. 2. 29. (목) 10:00~11:10
- 장소 :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실
- 주재 : 국민권익위원장
- 참석 :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광역의회 등 98개 행정기관의 감사관

## □ 진행 순서(안)

시 간(잠정)	내 용	비 고
10:00~10:03	3' ▪ 개회 및 국민의례	청렴정책총괄과장
10:03~10:08	5' ▪ 모두말씀	국민권익위원장
10:08~10:28	20' ▪ '24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과제 설명	청렴정책총괄과장
10:28~10:48	20' ▪ 기관의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사례 발표	해당 기관
10:48~11:08	20' ▪ 질의응답	참석자
11:08~11:10	2' ▪ 마무리 말씀 및 폐회	부패방지부위원장

※ 진행 시간은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순 서

<b>I.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성과 및 여건</b> .....	<b>1</b>
1. 2023년 국민권익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주요 성과 .....	3
2. 2024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여건 .....	6
<b>II. 2024년 반부패·청렴 정책 중점 추진 과제</b> .....	<b>9</b>
1. 공공기관 채용 과정의 부패·불공정 관행 근절 .....	11
2. 공공재정 부정수급 실태 관리 강화 .....	13
3. 지방 현장의 고착화된 부패취약분야 개선 .....	15
4. 현장에 기반한 반부패 행위규범 정비·운영 .....	18
5. 제도개선을 통한 부패·불공정 요인 해소 .....	27
6. 교육·협력을 통한 공직사회 자율적 청렴역량 내재화 .....	29
7.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를 통한 청렴도 향상 촉진 .....	36
8.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운영 내실화 .....	39
9. 공정·신속한 신고사건 조사 및 관리 .....	41
10. 국민이 공감하는 합리적인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	45

# 순 서

## Ⅲ. 기관의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사례 ..... 49

1. 중소벤처기업부의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사례 ..... 51
2. 질병관리청의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사례 ..... 54

## [ 참고자료 ] ..... 59

1. '24년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대상 지방자치단체 현황 ..... 61
2. 청렴연수원 개발 최신 교육 콘텐츠 목록 ..... 62
3. '24년 청렴연수원 교육 운영 일정 ..... 63

## [ 부 록 ] ..... 67

1. 기관별 협조요청 사항 요약표 ..... 69
2. 부서별 업무담당자 ..... 74



---

**반부패 · 청렴 정책  
추진 성과 및 여건**

---



## □ 우리나라 반부패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긍정적 평가 지속

○ (주요 국제지수) IPI·IMD·WJP 등 반부패 관련 국가별 인식과 수준을 나타내는 각종 국제적 평가 결과, 지속적 개선 추세 뚜렷

- '23년 공공청렴지수('24.1월 발표)\*는 아시아권 1위(전체 15위/119개국)로 역대 최고 결과 갱신(직전 평가 대비, 점수 0.01점 상승, 순위 3단계 상승)

\* 공공청렴지수(IPI,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 발표) : 사법제도의 독립성, 시민 참여 및 언론자유, 행정·예산·시장의 부패가능성 통제 수준을 2년 주기로 평가

- 뇌물공여·부패·정부자금 횡령 등 반부패 관련 주요 국제지수\* 또한 전년 대비 개선된 결과를 보임

\* ①국제경영개발원(IMD)의 국가경쟁력지수 중 '뇌물공여·부패비리' 항목,  
②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WJP)의 법치주의지수 중 '정부부문의 공적 지위 남용 여부' 항목  
③민주주의다양성연구원(V-DEM)의 민주주의지수 중 '입법·행정·사법·공공 부문의 부패 지수' 등



- 한국의 반부패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과 긍정적 평가

**【우리나라 반부패 정책에 대한 국제적 평가】**

- ✓ 한국은 '17년 이래 국가청렴도가 가장 개선된 국가 중 하나('23.1. TI 보고서)
- ✓ 한국은 '16년부터 국가청렴도에서 놀라운 성과를 보임('23.5. V-DEM 협력회의)
- ✓ 엘리트 부패의 조사처벌, 공직자 부패에 대한 무관용 의식 높이 평가('23.3. PERC 보고서)

##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부패 관행 근절

- **(고위직 부패)** 헌법기관·선출직 공직자 등에 의해 야기되어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심화시키는 사회 이슈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한 대응

### 【고위직 부패 실태조사 사례】

- **(공정채용)** 관계부처 합동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실태 전수 조사단」을 구성하여, 선관위 고위공직자의 가족 특혜채용 의혹 등 채용실태 전수 조사  
※ 국민권익위·인사처·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 조사단의 조사 결과, 312건 수사의뢰 및 채용담당자 등 28명 고발조치, 정책·제도개선 제안 권고
- **(가상자산)**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 제21대 국회의원 전원(298명)의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내역 등 조사  
※ '23. 9월~12월까지 약 3개월간 조사진행, 조사결과 12월말 국회 송부
- **(행동강령)**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행동강령 위반 의혹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 경조사 부적정 통지, 관할 체육문화시설 무단 이용 등 일부 지자체장·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 의혹이 제기되어 즉시 조사

- **(부패관행 타파)** 사회 부패 현안에 대한 선제적이고 즉각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 부적절한 부패관행을 근절하고 유사사례 재발 방지

### 【주요 부패현안 실태조사 사례】

- 태양광 사업관련 용역비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사업 인허가 관련 공직자 등 13명에게 수억원을 공여한 의혹을 조사하여 대검찰청에 이첩
- 국립공원공단 생태탐방원 숙박시설(예비객실)을 지인등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등 부정사용 실태를 적발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휴가철 국민불편 해소
- 지자체, 교육청 등 14개 기관에서 시설부대비로 개인 스포츠, 레저용품 구매 등 총 12억 상당의 부당집행 확인, 공공기관의 관행적 예산 낭비 차단

- **(토착비리 차단)** 시·도 및 자치구 자치법규의 부패·불공정 요인 평가·개선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행적 토착비리 가능성 차단

※ 2년간('22~'23년) 157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4,173건 개선 권고

### 【자치법규 개선 권고 주요 사례】

-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사전심사 기준 마련 및 부당사용 경비 환수, 지방의원 연구단체 용역심의 외부위원 참여 및 부당사용 연구활동비 환수 등
- **(기관운영)** 공무원 채용공고 기간 확대 및 공고절차 생략 금지, 금고지정 절차 명확화 및 협력사업비 공개 강화 등
- **(사업추진)** 지방행정동우회 불법 보조금 지원 차단, 시·도립예술단 단원 채용 방식 개선, 공공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기한 확대 등

## □ 법령·제도의 실효적 운영

- **(공정채용)**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신설('23.1월)로 사각지대없는  
공정채용 제도 확립 및 채용비리 신고 상시 처리 등 기능 강화
  - ※ 공정채용 관련 31개 조문과 표준서식을 반영한 '행정기관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을 마련하여 550개 행정기관에 권고('23.3월)  
→ 31개 조문 중 70% 이상 반영 기관 : 401개('23.12월 기준)
- **(공공재정)** 각급 기관의 공공재정환수 이행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공공재정 누수 방지 및 재정의 투명성 제고
  - ※ 각급 기관의 환수·제재부가금액 : ('20년)457억 → ('21년)1,066억 → ('22년)1,336억
  - ※ 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로 인한 환수 결정액 : 총 1,630억원('13.~'23.12월)
- **(보호·보상)** 공익신고 대상 법률 확대<sup>1)</sup>, 부패·공익신고 보상 기준  
정비<sup>2)</sup>, 보·포상금 지급대상 확대<sup>3)</sup> 등 부패·공익신고자 지원 강화
  - 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재난안전통신망법」 등 3개 법률 추가  
(대상 법률 : 471개 → 474개, '24.2.6. 시행)
  - 2)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비율(4~30%) 및 공익·부정청구 등 신고 포상금액  
(최대 5억원)을 부패신고와 동일하게 상향
  - 3) 국가·지자체뿐만 아니라 공사·공단 등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증대 및  
재산상 이익에 대한 보·포상금 지급 가능
- **(규제 현실화)** 농·축·수산업계, 문화·예술계 지원 필요성과 국민  
소비패턴 변화 등을 반영하여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 ※ [주요 개정 내용] 청탁금지법상 예외적 선물 가액 및 범위 현실화
    - ✓가액 : (기존) 농수산물·가공품 10만원 → (개정) 15만원(명절기간은 2배)
    - ✓범위 : (기존) 물품만 가능 → (개정) 물품과 물품·용역상품권까지 확대
  - ※ [개정 효과] “전년동월대비 '23.9월의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농축수산물은 40.9%,  
이쿠폰서비스는 42.8% 증가. 이는 농수산물 가액 상향 및 상품권 선물  
규제 완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23.11월, 연합뉴스)

## 《 대통령 말씀 》

- ▶ "정부는 출범한 이후 일관되게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 특정 산업의 독과점 폐해 등 부정과 불법을 혁파해 왔습니다. 올해도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24.1월, 대통령 신년사 중 일부)

## □ 국제사회에서의 반부패 논의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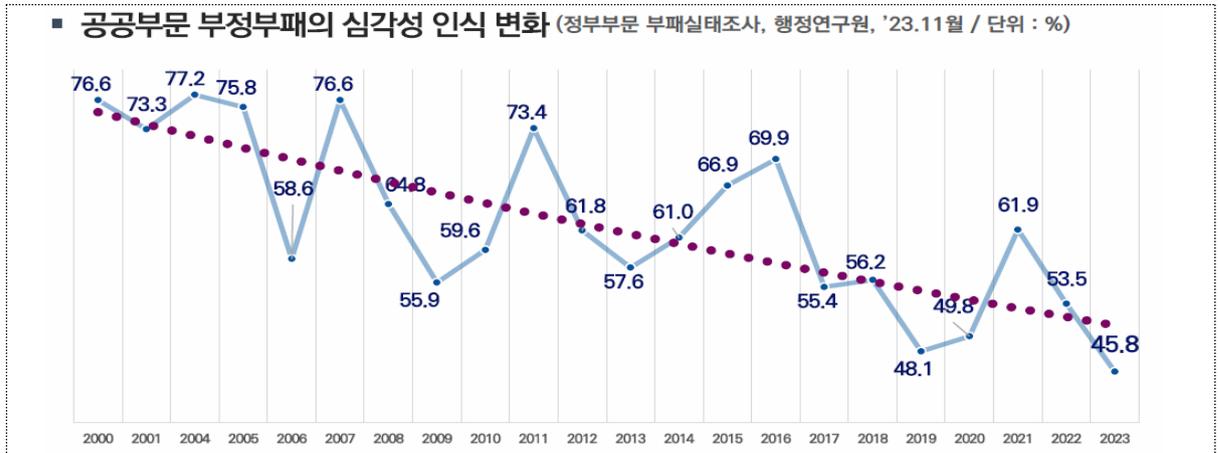
- **(국제 협력 확대)** UN, G20, APEC 등 국제사회 차원에서 반부패가 주요 의제로 부상하고, 국가간 부패방지 협조 체계 구축 확산
  - ※ 부패 관련 범죄 종식을 위해 강력한 국제적 협력과 지원 필요성 강조 (UN 반부패 특별회의, ’21.6월)
  - ※ 부패척결을 위한 법 집행기관 강화, 자산 회복 메커니즘 강화 등 고위급 원칙 승인 (G20, ’23.9월)
  - ※ 부패가 경제성장·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인식, 국경을 초월한 부패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와 공동 대응 등 반부패 의지 표명 (APEC, ’23.11월)
- **(부패범죄 제재)**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CPA)\*, 세계은행\*\* 등 부패 관련 범죄를 저지른 기업·개인에 대한 처벌 및 제재 수단 확대
  - \* 부패 관련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외국기업까지 처벌대상으로 확대
  - \*\* 국제개발사업 등 지원과정에서 부패와 연루된 기업과 개인을 블랙리스트로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공개된 리스트는 향후 일정기간 입찰 참여 제한
- **(윤리경영 확산)** UNGC, EU 등을 중심으로 ESG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윤리경영이 기업 투자시 의사결정 기준의 하나로 자리매김
  - ※ ESG :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강조하는 복합적 개념으로, 기업 경영에서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3가지 핵심 요소

## 【국내·외 ESG 관련 동향】

- **(UNGC)**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필요 요소로 ESG 개념을 최초로 사용("Who cares wins" 보고서, ’04년), UN PRI(책임투자원칙) 설립으로 ESG 투자 활성화 주도(’06년)
- **(EU)** 금융기관의 투자·금융 상품 등을 공시할 때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를 의무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상장 여부와 무관하게 ESG 관련 내용 공시 의무화
- **(국내)** 기재부·산업부·중기부·금융위 등 관계 부처에서 ESG 관련 다각적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

## □ 부패에 대한 국내·외 인식 개선의 전환점 필요

- 공공부문 부패에 대한 국민 인식은 장기적으로 개선 추세



- 그러나, 우리사회와 공직사회의 부패·불공정에 대한 국민과 공직자의 인식 격차가 크고, 청렴에 대한 높아진 기준으로 국민들은 우리 청렴 수준에 대해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

<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

구 분	일 반 국 민 (%)			공 무 원 (%)		
	'21	'22	'23	'21	'22	'23
우리사회가 부패하다	60.9	54.4	56.5	8.7	8.0	7.9
공직사회가 부패하다	49.8	38.6	38.3	2.9	3.3	2.4
우리사회가 불공정하다	55.5	50.4	49.5	19.5	16.4	19.9

※ 일반국민·공무원 각 1,400명 대상 '2023 부패인식도 조사' (국민권익위, '24.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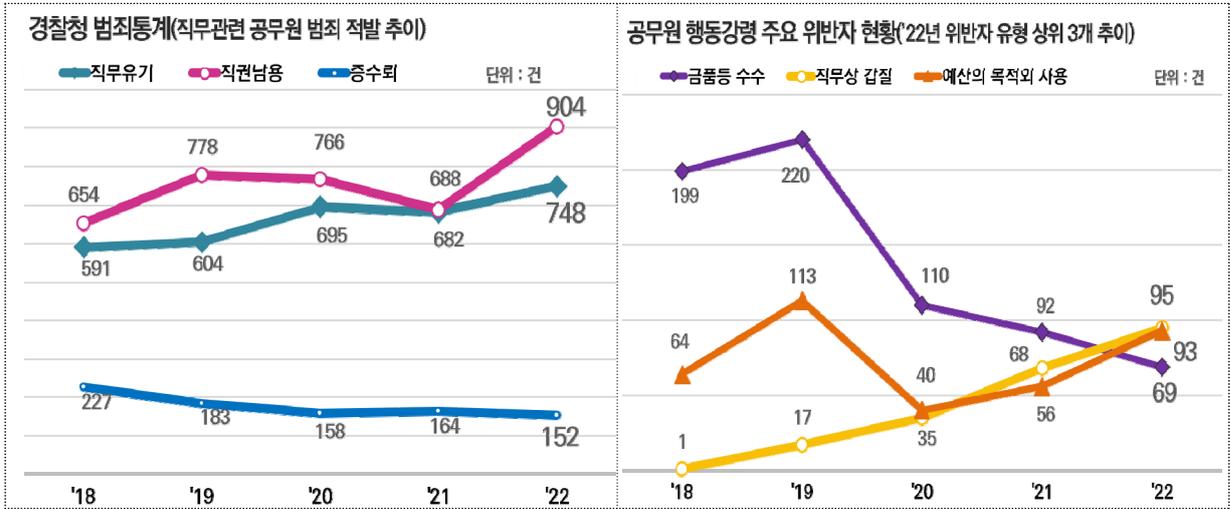
- 최근 1년간('22.7월~'23.6월) 공공기관과 직접적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의 부패인식과 부패경험 모두 전년 동일 기간 대비 악화

※ '23년도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국민권익위, '23.12월), 전년대비 부패인식 점수 2.9점 하락, 부패경험률 0.11%p 증가

- 국가청렴도(국제투명성기구 발표, '24.1월)는 지난해까지 꾸준한 개선세를 보였으나, '23년은 전년 대비 점수 동일, 순위 1단계 하락으로 주춤한 상태

※ ('16년) 53점, 52위 → ('17년) 54점, 51위 → ('18년) 57점, 45위 → ('19년) 59점, 39위 → ('20년) 61점, 33위 → ('21년) 62점, 32위 → ('22년) 63점, 31위 → ('23년) 63점, 32위

- 또한, 금품수수 등 전통적 공직자 부패는 감소 추세이나,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새로운 비금전적 유형의 부패는 증가 추세



## □ 민생 부패에 대한 엄정 대응 및 국내·외 협력 강화 요구

- '24년은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인사청탁, 이권개입, 전관특혜 등 카르텔형 부패 등 부패 취약·사각지대 부각 및 공직기강 해이 우려
- 직권남용·이해충돌 등 확장된 부패 요인을 예방 및 관리할 수 있도록 고도화된 부패방지정책 추진 필요
- 국민의 일상을 침해하는 민생 부패, 보조금 부정 수급 및 부적절 예산 집행 등 재정 부패에 대한 단호하고 엄정한 대응으로 국민 신뢰 회복
  - ※ 부패문제의 해결을 위해 '부정부패 행위에 대한 적발과 처벌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응답 ('2023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국민권익위, '24.1월)
- 국경을 넘나드는 부패 범죄자와 범죄 수익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적 대응 강화, ESG 경영 등 국제 반부패 규범 준수 필요 증대

**국민 일상을 위협하고 정부 신뢰를 하락시키는 고질적 부패 관행 근절로 청렴선진국으로서의 국제사회 위상 제고**



---

**2024년 반부패·청렴 정책  
중점 추진 과제**

---



- ◇ 채용실태 전수조사 등 채용비리 적발과 제도개선 등 채용비리 예방 활동을 통해 청년세대의 경제활동 관문인 채용 과정의 불공정성 해소

## □ 공공부문 공정채용 시스템 공고화

- (전수조사) 전체 공직유관단체의 '23년 채용과정 적정성 여부 점검
  - (조사대상) 필수조사\* 569개 기관 및 재량조사\*\* 817개 기관
    - \*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주관 '경영평가' 대상, 최근 3년간 실태조사 시 '징계 이상의 처분 요구' 발생기관 및 '23년도 신규지정 공직유관단체
    - \*\* 최근 3년간 실태조사 시 적발사항이 없거나 경미한 채용절차 위반이 지적된 기관 등
  - (조사방법) 감독기관 조사와 위원회 주관\*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
    - \* 위원회는 감독기관 부재 기관(23개), 채용비리 의혹 발생 기관 대상으로 집중 조사, 조사대상 과다 등의 이유로 감독기관이 위원회에 협조 요청 시 조사 협조
  - (후속조치) 채용비리 연루자 제재\* 및 피해자 구제\*\*, 부정합격자 퇴출\*\*\* 등
    - \* 수사 의뢰 즉시 업무 배제,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 엄중 조치
    - \*\* 다음 채용단계에 대한 재응시 기회 부여 등 피해자 적극 구제
    - \*\*\* 채용비리 직접 가담자에 해당 시, 기소 즉시 퇴출

### 【'23년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 454개 공직유관단체에서 867건 위반사례 적발】

- 주요 위반사례
  - 사무국장 본인이 채용계획, 인사위원회 개최, 공고 등 채용 과정에 결재 및 관여했음에도 동 채용에 응시해 정규직인 △△기획팀장에 최종 임용
  - 기관장과 친분관계 있는 응시자가 서류전형 시 탈락되자 응시자를 구제하기 위해 서류전형 재검토, 일부 심사위원 채점 결과 배제를 지시해 최종 합격
  - 채용계획 수립 전 감독기관 협의를 하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위반
  - 채용 주요사항을 누락해 공고하거나 의무적 공고일수(10일) 단축 운영 등 공고·접수 절차를 위반
  - 심사위원 구성·운영 부적정 및 서류·면접 부실심사 등 심사단계 절차를 위반
  - 국가유공자 가점 오적용 등 합격자 결정단계에서 절차를 위반

- **(제도개선)** 행정기관 내 비공무원(공무직, 기간제) 채용 관련 관리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행정기관 비공무원 공정채용 제도개선 권고('23.3)' 이행점검
  - ※ '23년도 이행점검 결과('23.12월 기준) : 공정채용 기준(31개 항목)을 70% 이상 반영한 기관은 총 401개(72.9%)

### [ 협조 요청 사항 ]

- '24년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적극 협조(전체기관)
  - (감독기관) 산하 공직유관단체 대상 조사 적극 실시 및 결과회신 (2~10월), 전수조사 후속 조치(수사의뢰, 징계요구 등) 적극 이행
  - (공직유관단체) 감독기관 조사·위원회 주관 조사 시 적극 협조, 전수조사 후속 조치(비위 연루자 제재, 피해자 구제 등) 철저
- 행정기관 비공무원 공정채용 제도개선 권고 관련 적극 협조 (전 행정기관)
  - 공정채용 기준(31개 조문) 자체 규정 미반영 기관의 경우, 조속한 규정화 및 공정채용 절차 준수 요망
- 채용비리 신고사건 조사 시 자료제출·현지점검 등 적극 협조 (해당기관)
  - 신고사건이 조사기관에 송부될 경우, 신고자 보호 등에 각별히 유의하여 조사 실시 및 권익위로 조사결과 통보 등 협조

- ◇ 공공재정 부정수급 제재조치의 **이행실태 점검 강화**, 부정수급 **취약분야 제도개선**, 신고 **활성화** 등을 통해 재정누수 방지 및 재정건전성 강화

## □ 공공재정 부정수급 총괄 관리기능 강화

- **(이행실태관리 점검)** 중앙행정기관·지자체·교육청 308개 공공기관 대상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 제재처분 이행실태 점검
  - 이행실태관리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제재부가금 미부과 등 제재처분의 적정성에 대한 **후속점검 실시**

### 【'22년 부정수급 제재조치 현황점검 결과】

- '22년도 각 기관의 부정수급 제재조치 현황점검 결과, **제재조치 금액은 총 1,336억 원(환수1,150억 원, 제재부가금 부과 186억 원인)**으로 확인
- 환수에 더해 제재부가금을 부과해야 함에도 미조치한 기관이 확인되어 환수액 대비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권고
  - (기관 유형별) 기초지방자치단체(174억 원), 중앙행정기관(22억 원), 광역지방자치단체(4억 원) 순으로 확인
  - (분야별) 택시비 보조금, 버스운전기사 인건비 등 교통 분야(59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 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복지 분야(53억 원), 기업 디지털화, 일자리 창출 등 경제 분야(26억 원), 어린이집 보육료, 보육교사 인건비 등 교육 분야(18억 원) 순임

- **(취약분야 집중점검)** 부정청구 빈발분야, 유사사례 발생 가능 분야 등 취약분야를 선정하여 합동점검 등 **집중점검 실시**
- **(자체점검 강화)** 공공기관별 환수·제재부가금 처분실적 및 취약분야 자체점검 노력 등을 **청렴노력도 평가에 반영 추진**
  - ※ '각급기관별 환수·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실적'(지자체·교육청) 및 '기관별 자체점검 노력'(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을 '24년 청렴도 평가에 반영 예정
- **(점검 협조)** 비영리민간단체의 보조금 부정사용\*에 대한 중앙부처별 제재조치(환수, 제재부가금, 명단공표) **이행실태 점검(매월)**

\*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감사(국무조정실 주관, '23.6.)

## □ 집중신고기간 운영 및 보·포상금 지급 강화로 부정청구 신고 활성화

- (신고 홍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3개월간)해 민생분야 및 민간 단체·기업 등에 대한 보조금 등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 적극 발굴
  - ※ 5대 빈발(보건복지, 산업자원, 고용노동, 여성가족, 교육)분야 등 신고 활성화 유도
- (기관협력 강화) 각급기관과 협력해 보·포상금 지급 확대 등 추진
  - 각급기관은 ①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에 보상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②포상금 지급기준 부합 대상자를 국민권익위에 적극 추천\*\*
  - \* 국민권익위 외 타 기관 신고 건도 보상금 지급기준에 부합하면 지급 가능
  - \*\* 공공기관 재산회복, 제도개선, 관련자 처벌 등 지급기준 부합시 지급 가능

### [ 협조 요청 사항 ]

- 공공재정 부정수급 제재처분 관련 자료 제출(대상 308개 공공기관)
  - ※ 각급기관별 '23년 하반기 부정수급 제재처분 현황 공문 제출(~2.29.)
- 후속점검을 위한 자료요청 시 적극 협조(해당 공공기관)
- 국무조정실 주관 보조금 감사결과에 따른 제재조치 이행실태 월별 점검자료 제출 협조(해당 중앙부처)
- 기관별 자체점검 적극 참여 및 '정부지원금 집중신고기간' 운영관련 각급기관의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 적극 홍보 협조(전 공공기관)
- 권익위에서 취약분야 합동점검 요청 시 적극 참여(해당 공공기관)
- 권익위외 타기관 신고자에게 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 포상금 지급기준 대상자를 권익위에 적극 추천(전 공공기관)

- ◇ 국민 생활 밀착지점에서 발생하는 부패관행 근절 및 부패취약분야의 제도적 개선을 통해 지방 현장의 청렴수준 개선 도모

## □ 지방 현장의 부패·불공정 관행 타파

- **(실태점검)** 지방현장의 반부패 행위규범 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특히 청렴도 저조 기관의 행동강령 이행실태 집중 점검 실시
- ※ (이해충돌방지법) 지방의원 및 그 가족 등이 운영하는 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 실태, 의원 직무 관련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현황 등 집중 점검
  - ※ (행동강령) 청렴도 저조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의계약·업무 추진비·출장비 운영 실태 등 집중 점검

### 【지방 현장의 부적절한 계약 행태 관련 언론 보도】

- ○○시의원 관련 업체 다수 수의계약 수주 의혹 (노컷뉴스, '24. 1. 24.)
  - "이해충돌방지법? 그건 몰라..." 지방의회의원 '묻지마 수의계약' (연합뉴스, '23. 09. 14.)
  - 지역 시민단체 "지방의원 불법 계약 만연...감사 촉구" (뉴시스, '23. 9. 5.)
  - ○○군의원 배우자 업체가 8년 동안 35억원 수의계약(KBS라디오, '23. 8. 1.)
  - 내 회사로, 배우자 명의로 쓱~ "수의계약 나도 몰랐다"는 의원님들(SBS, '22. 7. 16.) 등
- **(청렴도 평가)** 전체 지방의회('23년도 92개 → '24년도 243개 전수)의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 전반에 대한 청렴수준 종합 평가 실시
- ※ 특히 종합청렴도 평가를 최초로 실시하는 일부 지방의회의 경우, 평가 대상 기관 워크숍(상반기 중 예정, 개최 계획은 별도 공문 안내) 등 적극 참여로 평가 실시에 차질없도록 협조 필요
- **(자치법규 개선)**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자치법규 속에 내재된 부패 등 유발요인 집중 평가·개선 권고
- ※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등 예산의 사적 사용, 비위 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등 부패·불공정 유발 규정 집중 발굴·평가

**【'24년 지방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요】**

- (대상) 86개 기초 시·군(집행부 및 지방의회 포함) 소관의 현행 자치법규  
 ※ 조례·규칙·훈령·예규 외에 내부지침 등도 필요시 평가대상에 포함
- (일정)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을 분리하여 반기별 순차 평가  
 ※ 상반기 중 지방의회 우선 평가, 하반기 중 집행기관 실시 예정
- (방식) 지난 2년간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발굴한 부패 취약분야  
 중점 점검, 부패 이슈·부패성 규제 등 추가 발굴·평가  
 ※ 취약분야 : '22~'23년 부패영향평가 시 개선권고가 많았던 지방의회, 회계·복무, 포상제도, 각종 위원회, 보조금 등

- (사후 관리) 개선권고 이행 조치기한이 지난 기관은 이행현황 점검 및 이행이 저조한 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 추진

< 개선권고 조치기한 및 이행점검 일정 >

계	'22년	'23년	
평가기관	79개 시·군·자치구	17개 광역 시·도	61개 자치구
조치기한	'23.6월	'24.3월	'24.8월
이행점검	'24. 하반기	'24.4월	'24.9월

- ※ '22년 평가기관의 점검 시기는 상반기로 변동 가능
- ※ '23년 평가기관은 이행실적 제출로 이행점검 같음

**□ 지방 현장의 청렴역량 강화 지원**

- **(교육 지원)** 지방의회 의원 및 소속 공직자의 청렴교육 지원, 맞춤형 교육자료 제공을 통한 반부패 법령·제도 내재화 지원
  -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의 '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 확대 운영(연 55회)  
 ※ 수요조사('23.12월~'24.1월)를 통해 교육 대상 의회 선정 완료('24.1.22. 공문 발송)
  - 지방 현장에서 유의해야 할 행위규범 등 맞춤형 교육자료 제작·배포  
 ※ 지방의회 맞춤형 이해충돌방지법 매뉴얼 제작·배포 완료('24.1월)
- **(소통 강화)** 지방자치단체·교육청·지방의회 등 지방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반부패 법령·제도 개선사항을 검토하고 현장의 어려움 등 청취 기회 마련

## [ 협조 요청 사항 ]

### < 실태점검 관련 >

- 이해충돌 방지제도 취약분야 집중 점검 협조(지방의회)
  - 수의계약 등 취약분야 점검 관련 현장조사 협조(상반기)
- 지방의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협조(대상 지방의회)

### <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

-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전수 평가 실시에 따른 워크숍 참석 및 평가 자료 제출 등 협조(지방의회)

### <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관련 >

-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실시에 따른 협조
  - 내부지침, 매뉴얼, 방침서 등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공개되지 않은 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 요청 시 제출(86개 시·군 지방의회)
  - 개선권고안 의견조회시, 개선권고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검토하여 기한 내 회신(86개 시·군 지방의회)
- 기 권고 사항 이행 협조
  - '22년 평가기관 중 개선권고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기관은 조속히 이행(79개 시·군·구)
  - '23년 평가기관은 국민권익위에 제출한 추진계획에 따라 개정 추진(17개 광역, 61개 자치구)
  - 이행 조치기한 경과 후 이행실적 제출(17개 광역 4월, 61개 자치구 9월)

### < 교육·소통 관련 >

- 지방의회의원 및 소속 공직자 청렴교육 적극 이수(지방의회)
- 지방 현장 정책 간담회 등 추진시 협조(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지방의회)

## 1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시행

- ◇ 합리적 해석기준 및 효율적 제도운영 방안 제시로 제도의 실효성 제고
- ◇ 실태조사 및 맞춤형 교육·홍보를 통해 이해충돌 방지제도 이행력 제고

### □ 이해충돌 방지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기준 및 절차 정비

- **(운영지침)** 행위기준별 세부 점검 및 관리 절차 등을 반영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개정 및 표준안 배포(~6월)

#### 【주요 개정 내용(안)】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등에 대해 '계속 수행' 조치(법 제7조제2항)하는 경우, 사후 확인·점검 절차 및 방법
- 직무 관련 외부활동(법 제10조제2호)에 대한 소속기관장의 허가 절차 및 방법
-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 및 자료 협조 동의서(별지 제7호),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결과 통보서(별지 제4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별지 제10호) 등 서식 변경 반영

- **(가이드라인)** 취약분야 관련 제도운영 시 주의사항, 모범사례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배포(연중)

※ '23년 실태조사 및 현장 간담회 결과 도출된 시사점 반영

#### 【주요 안내 사항(안)】

-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 수익·금지(법 제13조) 관련 점검·관리 기준
- 수의계약 체결 제한(법 제12조) 관련 제도운영 모범사례 전파
- 민간위원이 포함된 위원회 관련 위원 위촉 및 위원회 운영 시 주의사항
- 경제자유구역청, 각종 위원회 조직 등 다수 기관으로부터 공직자를 파견받아 운영하는 기관 대상 제도운영 제반 사항 안내

- **(업무편람)** 유권해석 및 위반신고 모니터링을 통해 빈발 질의사항에 대한 합리적 해석기준을 정립하고, 업무편람 반영·배포(10월)

※ 쟁점사항은 전문가 자문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해석기준의 합리성 제고

## □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 운영

- **(실태조사)**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족채용 제한 등 주요 행위기준에 대한 '공공기관 제도운영 현황 조사' 실시(9~12월)
- **(취약분야 점검)** 위반사례가 빈발하는 취약분야와 관련하여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실태 집중 현장 점검 실시(상반기)

※ 법 적용대상 고위공직자가 많고, 지역 경제활동과 연계된 의무 준수 사항이 많은 광역·기초 지방의회 대상 집중 점검

### 【주요 점검 사항(안)】

- 지방의회의원 및 그 가족 등이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실태
- 경쟁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지방의회의원의 가족 채용 현황
- 의안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의원 직무 관련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현황

- **(유권해석·신고처리)** 각급 기관의 법 해석·적용 관련 문의 및 국민 권익위에 접수되는 법 위반신고의 신속·공정한 처리(연중)

## □ 교육·홍보를 통한 이해충돌 방지제도 내재화

- **(교육)**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을 인식하는 민감성을 높이고, 법에 따른 행위기준을 자연스럽게 이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 교육 실시
  - **(맞춤형 교육)** 기관 유형과 직무특성을 반영한 직접교육 실시(연중)
    - ※ 제도 정착 지원을 위한 주요 교육 대상 : 지방의회, 국립대학교, 민간 위원 포함 위원회
  - **(권역별 설명회)** 기관별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대상 제도 개선사항 안내 및 유의사항 공유를 위한 이해충돌 방지제도 설명회 개최(9월)
- **(홍보)** 법 인지도와 규범성 제고를 위한 맞춤형 전략 홍보
  - **(공직자)** 의무를 알지 못해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이해충돌방지법 바로 알기 시리즈' 제작·배포\*(분기별) 및 유권해석 사례집 제작·배포(12월)
    - \* 주요 취약 분야를 이해하기 쉬운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해 권익위 블로그 등 배포
  - **(국민)** 법 시행 2주년 계기 이해충돌방지법 홍보 영상 제작·배포(5월), 중점 정책 사항 홍보 리플릿, 홍보 물품 등 제작·배포(연중)

## [ 협조 요청 사항 ]

- 기관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개정(전 공공기관)
  - 현재까지 운영지침을 미제정한 기관은 개정 표준안(6월 배포 예정)을 반영해 제정하고, 이미 제정한 기관은 개정 표준안을 반영해 개정
- 이해충돌 방지제도 취약분야 집중 점검 협조(지방의회)
  - 수의계약 등 취약분야 점검 관련 현장조사 협조(상반기)
- 이해충돌방지법 법정 의무 교육 이행(전 공공기관)
  - 소속 공직자들이 주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시 권익위에 지원 요청\*
  - \* 제도 정착 지원이 필요한 지방의회, 국립대학교 및 민간위원이 포함된 위원회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은 필요시 적극적으로 맞춤형 교육 지원 요청
- 이해충돌방지법 권역별 설명회 적극 참여(전 공공기관)
  -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대상 교육·안내를 위한 제도 설명회 참여(9월 예정)
- 공직자의 수범성 제고를 위한 자체 점검 등 이행 노력 전개(전 공공기관)
  - 수시 배포되는 제도운영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소속 공직자의 의무 이행 현황을 자체 점검하고, 법 위반 분야 재발 방지 노력 등 전개
-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현황 실태조사 협조(전 공공기관)
  - 기관별 제도운영 현황 관련 자료 제출 및 현장조사 협조(9~12월)
- 국민권익위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건을 조사기관\*에 이첩·송부하는 경우, 조사 실시 및 결과 통보 등 협조(해당 기관)
  - \*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법 제18조)
- 제도 운영 관련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의견 공유(전 공공기관)

※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팀 (전화) 044-200-7674, 7679, 7681

(메일) tethr17@korea.kr, csy1009@korea.kr, nars28@korea.kr

## 2 청탁금지법의 규범력 제고

- ◇ 내실 있는 실태점검 및 자율적 준수 의식 고취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를 뛰어 넘는 청렴문화를 공직사회 내 시스템으로 정착

### □ 청탁금지법 운영 실태점검을 통해 공직 전반의 청렴문화 확산·강화

- 각급 기관별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처리실태 등 제도 운영 실태 점검으로 부적절 사례 적발·시정 및 청렴문화 인식 환기(상반기)
  - 정기 실태점검을 통해 확인된 신고사건 부적절 처리 기관 등에 대해 현지점검 등으로 시정조치하여 제도 운영 사각지대 해소
    - ※ 기관별 제도 운영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한 의견수렴 등 소통형 점검을 실시하여 각급 기관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등 모색

#### 【'23년 청탁금지법 위반실태 점검결과 주요 위반사례】

- (부정청탁 금지 위반 사례) △△팀장은 계약 담당부서에서 진행하는 제안서 평가에서 특정 제품을 선택하라고 계약 업무담당 직원들에게 청탁
-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 사례) 공직자 A는 △△평가 외부위원으로 위촉되어 평가 대상기관 직원 B로부터 약 80만원 상당의 호텔 객실 이용권을 수수
- (신고사건 부적절 처리 사례) 공직자 A가 공사 발주 및 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감독하는 공사업체 직원 B로부터 약 4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사건에서, 소속기관이 금품 제공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요청을 하였지만, 제공자 소속회사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통보 하지 않음

-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언론보도·감사원 감사결과 등을 적극 모니터링 하여, 신고처리 부적절 사례 등에 대한 상시 점검·개선 요구(수시)
  - ※ 시정조치 미이행기관 대상 청렴도 평가 반영 등으로 이행력 확보

### □ 국민 속으로 청탁금지법 정착 위한 대국민 홍보 및 안내 강화

- 국민이 알아야 할 주요 행위기준을 알기 쉽게 안내함으로써 법 오인으로 인한 위반자 발생 방지 및 긍정적 법 인식 확산 도모

- 금품·향응 등 주요 취약시기별\*로 빈발질의, 위반유형 등에 대한 안내를 선제적으로 실시
  - \* 설·추석 명절, 학교 입학·졸업, 공직선거, 연말·연시 등 금품수수 빈발 시기
- 언론 등에서 제기되는 이슈에 대해 보도자료, 카드뉴스 등을 통해 위반사례, 해석기준을 신속히 전파하는 등 예방활동 전개(수시)
- 각급 공공기관의 청탁금지제도 운영 역량 강화를 통해 최상위 기관부터 일선 기관까지 빈틈없는 반부패 준수 의식 함양
  - 청탁방지담당관 등 제도 운영 담당자를 대상으로 형사처벌·과태료·징계 사례, 신고 처리 방법, 우수사례 공유 등 맞춤형 교육 실시
    - ※ 기관 유형별 청탁방지담당관 및 감사·윤리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설명회 등

## [ 협조 요청 사항 ]

-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 실태점검 협조(전 공공기관)
  -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접수·처리 등 제도 운영 현황에 대한 서면 점검 자료 제출(2~3월) 및 현지 방문 점검 협조(4~5월)
  - 신고처리 부적절 사례 등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 협조(하반기)
- 청탁금지법 설명회 등 교육·홍보 적극 참여(전 공공기관)
  - (교육) 상·하반기 청탁금지법 제도 운영 설명회(2월, 9월 예정)
  - (홍보) 설·추석, 학교 입학·졸업, 공직선거 등 부패취약시기별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홍보자료(카드뉴스, 홈페이지 배너 등) 배포 및 각급 기관별 홈페이지 안내 등 홍보 협조(수시)

### 3 공직자 행동강령 내실화

◇ 각급 기관별 행동강령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자율적 이행 노력 유도 및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실태점검을 통한 행위기준 재정립

#### □ 기관별 행동강령 제도 운영 내실화

- (개정사항 반영) 선물의 가액범위 상향('23.9.),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규정 삭제('22.6.) 등 개정사항을 기관별 행동강령에 개정·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속히 개정하여 관리 강화

< 행동강령 행위기준의 주요 개정사항 >

구분	행동강령 행위기준	개정일
선물수수 가액범위 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가액 상향 (10만원→15만원, 설날·추석 20만원→30만원)</li> <li>■ 물품 및 용역상품권 선물 허용(금액상품권 제외)</li> </ul>	'23. 9.
이해충돌 방지규정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li> <li>■ 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li> <li>■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li> <li>■ 가족 채용 제한</li> <li>■ 수의계약 체결 제한</li> <li>■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li> <li>■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li> <li>■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li> </ul>	'22. 6.
직무상 갑질 금지 규정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무권한 등을 이용한 부당행위의 금지</li> <li>■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li> </ul>	'19. 1.

- (행위기준 개선) 공공기관 행동강령책임관·업무담당자 간담회 등의견수렴을 통해 행동강령 제도운영 보완사항 발굴·개선

※ 행동강령 개념이 모호하거나 규정 적용상 어려움이 있는 행위기준에 대해서는 업무편람 등을 통해 해석기준을 구체화하여 법령 적용력 제고

-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되는 **행동강령 이슈에 적극 대응하여 해석 기준, 위반사례 등을 즉각 전파**

※ (예시) 공무원들의 출장여비 부당 수령이 이슈화될 경우, 예산 목적외 사용 관련 행동강령 해석기준·위반사례를 보도자료·SNS 등을 통해 전파

- **(행동강령 제정 지원) '24년 신규 지정 공직유관단체 대상 기관별 행동강령 제정 지원을 통해 행동강령 이행기반 조속 구축**

※ 행동강령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신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컨설팅, 설명회 등을 통해 행동강령 제도 운영 역량 강화

## □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생현장의 행동강령 이행점검 강화**

- **(고위공직자 부패행위 수사점검) 지자체장의 무분별한 경조사 통지, 특혜 소지 등 국민 관심이 큰 행동강령 위반사건을 신속·중점·직접조사**

- 행동강령 위반사항을 감독기관에 통보하여 관계자 징계 등 조치 요구 및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전 공공기관 대상 관계법령 준수사항 전파

###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현안 대응 사례】**

- ○○시 지자체장 경조사 통지 제한 위반('23.3.), ◇◇시 지자체장·지방의원 수영장 이용 특혜 의혹('23.4.) 언론보도·이슈화

▶ 즉시 조사해 위반사실 확인·통보 및 보도자료 배포, 전체 공공기관 대상 경조사 통지('23.4.) 및 문화체육·휴양시설 이용('23.5.) 관련 행동강령 준수사항 안내·공유

- **(정부업무 위탁·대행기관 집중점검) 예산 100억원 이상이면서 재해구호, 시설 안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재정 누수 집중점검**

- 최근 일부 정부업무 위탁·대행 기관에서 법인카드 사적 사용, 지인과의 수의계약 등 재정비리가 적발되는 등 감독 사각지대 존재

※ 대상기관(안) : 재해구호, 건설·상하수도·전기공사, 산업안전, 선박검사 등 20여개

### **【주요 점검 분야(예시)】**

- **(계약 관련 특혜)** 법령·내규의 근거 없는 특정 업체와의 부적절한 수의계약 등
- **(부적정한 회계관리)** 정부업무 위탁·대행 예산 방만 운영, 증빙자료 관리 미흡 등
- **(재정 누수)** 지출 증빙없는 회의비·출장비 지급, 업무추진비 선결제·분할결제·사적 사용 등

- **(지방현장의 부패취약분야 개선)** 지방세 징수포상금 방만 운영, 피복비 부정 사용, 지방의회의원의 계약 관련 이권 개입 등 지방 일선의 재정 누수 취약부문 점검·개선
  - ※ 청렴도 평가 결과가 저조한 광역·기초자치단체, 지방의회 등 대상 중점 점검
- **(부패취약시기) 설·추석 명절 선물·향응 수수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발생 우려가 높은 시기를 전후하여 행동강령 이행실태 집중 점검
  - ※ 언론 등을 통한 행동강령 위반 이슈 발생 기관, 행동강령위반 신고 빈발 기관, 청렴도 평가 하위기관, 부패행위 발생 기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

### [ 협조 요청 사항 ]

- 기관별 자체 행동강령 제·개정사항 제출(전 공공기관)
  - 자체 행동강령 제·개정이 완료될 경우 ① 자체 행동강령 개정 전문, ② 신·구 조문대비표를 공문으로 송부
    - ※ 국민권익위에서 기관별 자체 행동강령 제·개정사항에 대한 시정·권고 사항을 통보받은 기관은 기관별 자체 행동강령에 시정·권고사항 신속히 반영
- 국민권익위에서 행동강령위반 신고사건 조사, 행동강령 이행 점검 시 자료 제출·현지점검 등 협조(해당 공공기관)
  - 행동강령위반 신고사건 조사기관 송부시 신고자 보호 등에 각별히 유의하여 조사 실시 후 권익위로 조사결과 통보 등 협조
  - 이행점검 시 확인된 행동강령 위반사항,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며, 해당 관계기관은 행동강령 위반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제도개선 검토 등 협조

- 기관별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자율적 이행 노력 전개(전 공공기관)
  - 각급 기관별 소속 공직자 대상 갑질 금지, 경조사의 통지 제한 등 행동강령 주요 행위기준에 대한 자체 행동강령 교육 적극 실시
    - ※ 국민권익위에서 공문으로 안내한 사항 적극 활용
      - ✓‘경조사 관련 행동강령 준수사항 안내’(’23.4.)
      - ✓‘문화체육·휴양시설 특혜 이용 관련 행동강령 준수사항 안내’(’23.5.) 등
  - 부패취약시기 등 기관별 자체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을 통한 자율적인 행동강령 위반행위 예방 활동 적극 전개
    - ※ 필요시 점검실적 제출 요청 등을 통해 점검실적 확인 예정
- 행동강령 위반 신고 빈발분야 재발 방지 노력 강구(전 공공기관)
  - 특히, 출장여비 신청 및 지급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관련 법령·조례·사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출장여비 허위·부당수령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공직자 교육 및 자체 점검 실시
    - ※ 출장여비 허위·부당수령자에 대해서는 부정수령액 환수 및 가산징수, 징계 등 엄정 대응을 통해 재발 방지 및 불법적 비위 관행 원천 차단
- 기관별 행동강령 위반자 현황 및 운영실적 자료 청렴포털 자료입력(전 공공기관)
  - 공공기관장은 반기별로 기관별 행동강령, 행동강령 위반자 현황 및 운영실적자료를 청렴포털을 이용하여 권익위에 제출
    -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30조
  - 특히, 위반자 현황 및 운영실적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 '23년 하반기 위반자 현황 및 운영실적 입력기간 : ~ '24. 3. 13.

- ◇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제도개선 권고과제의 지속적인 이행관리로 불합리한 법령·제도를 정비해 국민이 체감하는 반부패 효과 확산 기여

## □ 공정사회 구축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공정사회 기반 구축) 국민생활 속 불공정·민관유착 등 구조적 부패 관행 개선

< 공정사회 구축 분야 추진 예정 과제 >

연번	과 제 명	권고시기
1	투명하고 검소한 관사 운영	상반기
2	국립대병원 상임감사 채용 공정화	하반기
3	지방의회 의정정보 공개 실효성 제고 방안	상반기
4	공공계약 부문 불공정·갑질 잔재 제거	하반기
5	지방공공기관 음주운전·성비위 징계 강화	하반기
6	각종 협회·단체, 비영리법인 조직운영 투명성 제고	상반기
7	공공기관 금고·주거래은행 지정, 협력사업비 관리 투명성 제고	상반기
8	지역 농·축·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 운영관리 강화	하반기
9	노인 요양병원·요양원의 재정누수방지 및 공공성 강화	하반기

- (예산낭비 방지) 경제회복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정책자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공공재정 지원·집행의 누수 방지

< 예산낭비 방지 분야 추진 예정 과제 >

연번	과 제 명	권고시기
1	공적항공마일리지 활용방식 개선	상반기
2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하반기
3	건강보험 허위 직장가입자 방지 방안	하반기

## □ 제도개선 권고과제에 대한 사후관리(이행점검)

- **(정기 이행점검)** 제도개선 권고과제에 대한 주기적 이행점검 대비
  -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이행현황 통보(전수조사, '24.3월 예정) 관련, 각급 기관은 과제별 이행실적 확인 후 점검결과 제출
    - ※ 제출사항 : 이행완료 여부, 미이행 과제별 지연 사유 및 추진계획 등
    - ※ 기관별 제도개선(부패방지 분야) 이행실적은 종합청렴도 평가에 지표로 반영
- **(맞춤형 관리)** 이행 저조기관에 대한 맞춤형 이행관리(수시)
  - 미이행 과제의 조속한 이행방안 협의 및 대체방안 논의를 위해 찾아가는 기관별 컨설팅 실시('24.3월, 이행현황 통보 시 신청안내)
  - 이행률이 일정수준 이하이거나 확인이 필요한 기관에 대한 현지 이행실태 점검 실시('24. 11월)
  -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됨에도 개선되지 않는 문제사례 등은 언론 공표
- **(장기 미이행 과제)** 권고 후 조치기한이 상당기간 지났음에도 이행률이 저조한 과제에 대한 전수 점검 실시(계속)
  - 점검 결과, 권고 취지가 현재도 유효하고 국민 입장에서 조속히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경우 추가 실태조사를 거쳐 재권고 검토
  - 환경 및 정책변화 등으로 시의성 떨어지는 과제는 관리종결 검토

### [ 협조 요청 사항 ]

- 제도개선 관련 자료제출 요청 및 제도개선 방안 의견조회 시기한 내 제출(전 공공기관)
- 기관별 권고 이행현황 통보 시 점검결과 필히 제출(전 공공기관)
- 제도개선 실태조사, 이행점검 등 업무과정에 적극 협조(전 공공기관)
  - ※ 우수 협조기관에 대해서는 연말 포상 추천

## 1 법정 청렴교육 관리 내실화

- ◇ 공직자 의무교육인 청렴교육 내실화, 효과적인 청렴교육 지원을 통한 청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 □ 법정 청렴교육 관리 내실화

- 공직자는 부패방지교육을 매년 2시간 이상 이수 필요('16.9.30. 시행)
    - 신규자와 승진자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고위직(기관장 포함)은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에 의거, **대면교육 이수 대상자**로 지정
  - 공공기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부패방지교육 실시결과를 권익위에 제출** 하고, 권익위는 부패방지교육 실적을 점검('16.9.30. 시행)
  - 부패방지교육 실적 점검 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관리자 특별교육 및 이행계획서 징구**('22.7.19. 시행)
- **(교육실적 점검) 공직자 부패방지교육**(「부패방지권익위법」 제81조의2) 의무화에 따른 공공기관의 교육운영 실적 점검 실시
- '23년도 기관별 부패방지교육 추진 실적을 '공공기관 청렴포털'을 통해 취합 및 점검(서면, 현장점검 등) 실시
  - 교육 이수율이 저조하거나 교육실적을 부실하게 제출한 기관 등 추가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예정**
- ※ 현장점검 시, 교육지침 안내 및 의견수렴 등 컨설팅 병행 예정

#### 【'22년 부패방지교육 실적점검 결과】

- (실적 제출률) 부패방지교육 실적 제출률 99.9%로 1.0%p 상승
  - ※ ('16)70.5% → ('17)90% → ('18)95.3% → ('19)95.8% → ('20)96.9% → ('21)98.9%
- (전체 이수율) 부패방지교육 이수율이 95.6%로 전년대비 0.6%p 상승
  - ※ ('16)85.3% → ('17)90.3% → ('18)91.2% → ('19)93.1% → ('20)93.3% → ('21)95.0%
  - 교육청/교육지원청의 이수율이 가장 높고, 국공립대학 및 지방의회는 다른 기관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수율 저조

**<기관유형별 부패방지교육 이수율>**

구 분	전체	중앙 행정기관	지방 자치단체	지방의회	교육청/ 교육지원청	국공립 대학	공직유관 단체
이수율	95.6%	97.1%	93%	89.2%	98.3%	75%	95.2%
전년대비 증감율	▲0.6%p	▼0.2%p	▲0.8%p	▲0.4%p	▲0.2%p	▲12.3%p	▲0.7%p

\* 광역자치단체 93.6%, 기초자치단체 92.7% , 광역의회 82.1%, 기초의회 92.1%

- 고위직(기관장 포함) 등 대면교육 대상자의 교육 이수율도 전년 대비 6%p ('21년, 81.5% → '22년 87.5%) 상승

○ **(교육 지원) '24년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 온라인 설명회, 교육여건 취약 기관 대상 맞춤형 교육 등 현장 담당자의 체계적 제도운영 지원**

- 온라인 설명회 개최 시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 내용 및 고위 공직자 청렴교육 이수율 관리 방법(청렴노력도 평가지표) 등 안내 예정
- 교육 이수율 저조 기관, 신규 지정 공직유관단체 등 대상 맞춤형 교육\* 기회 제공

\* 실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대면교육 실적으로 인정 가능

**[ 협조 요청 사항 ]**

○ '23년 청렴교육 실적 제출(전 공공기관)

- '23년에 각급기관에서 실시한 청렴교육 실적을 청렴포털 시스템\*에 입력·제출(~2.29)

\* <http://ep.clean.go.kr>

○ 「'24년 부패방지교육 운영 지침」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 실시 및 온라인 설명회 참여 협조(전 공공기관)

※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 온라인 설명회는 '24. 3월 중 실시 예정

○ '23년 청렴교육 실적에 대한 현장점검(3월~6월) 시 협조(해당 기관)

- 교육실적 부진, 증빙자료 제출 미흡 등 교육안내 및 현장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

## 2 분야별·대상별 교육 과정 운영

- ◇ 공직단계별·기관유형별 맞춤형 청렴교육 운영을 통한 청렴교육 내실화
- ◇ 청렴교육강사 양성 및 교육콘텐츠 공유를 통한 자체 청렴교육 지원

### □ 청렴연수원 주요 원내교육 과정 안내

- **(대면교육 의무자)** 고위직 및 신규·승진 공직자 대상 맞춤형 집합교육 운영을 통해 공직 단계별로 필요한 청렴 역량 함양
  - ※ 고위직(12회), 승진자(10회), 신규자(10회) / 대면 집합교육, 매회 40명
  - ※ 과정별로 교육 형태 및 교육 내용을 다양화하여 운영
- **반부패·청렴업무 담당자 대상 맞춤형 교육과정**
  - 사례 중심의 반부패 법령 강의, 토론 및 체험학습 등으로 구성된 **‘공직자 청렴역량 심화과정’** 운영(연 3회) **신규**
    - ※ 교육 이수 시 감사·청렴업무 담당자에 한하여 ‘청렴교육 내부강사 양성 과정’ 및 ‘청렴교육 강사양성 전문과정(법령·정책)’ 교육 이수로 인정
  - 반부패·청렴업무 담당자를 강사로 양성하여 기관 자체 청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부강사 양성과정’** 운영(연 6회)
    - ※ 교육과정 수료 후 필기시험 합격자에게 1년간 내부강사 자격 부여
- **공직 업무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신규**
  - (인사·계약) 인사·계약 분야 감사 지적사례, 업무 수행 관련 반부패 법령·제도 등으로 구성된 **‘부패대응역량 향상 과정’** 운영(연 6회)
  - (교육행정직·교직원) 공교육 분야 주요 부패 및 이해충돌 사례 분석 등을 통해 공교육 종사자의 부패 대응 능력 강화(연 3회)
- **(권익구제 교육과정)** 공직자 권익구제 역량 향상을 위한 고충민원·권익개선·행정심판 전문 교육과정 운영
  - (고충민원) 고충민원 처리제도 및 대응 방법, 업무분야별 고충민원 전문교육 등으로 구성된 **‘고충민원처리 역량강화 과정’** 운영(연 6회)

- (권익개선) 분야별 제도개선 사례, 적극행정 국민신청, 국민신문고 시스템 실습 등으로 구성된 '권익개선 역량강화 과정' 운영(연 6회)
- (행정심판) 행정심판 제도 소개, 정보공개 심판 특성, 국선대리인 소개 등으로 구성된 '행정심판 역량강화 과정' 운영(연 4회)

## □ 청렴연수원 방문교육 안내

- (청렴Live) 반부패·청렴 특강과 판소리, 연극 등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가 어우러진 기관 방문교육 '청렴Live' 운영(연 80회)
  - ※ 대상기관 선정 시 기관장·고위직 참석률, 교육인원, 기 수혜 여부, 청렴도 등 고려
  - ※ 교육일시 및 프로그램은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
- (청년인턴 교육) 사회초년생인 청년인턴과 청년보좌역이 알아야 할 청렴 특강, 청렴 인문학 콘서트 등으로 구성된 교육 운영 **신규**
  - ※ 기관 대상 수요조사(~2.7) → 교육운영(5월, 8월)

## □ 지방의회 대상 청렴교육 강화

- 지방의회의 청렴수준 제고를 위해 지방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 대상 청렴교육 강화 추진
  - '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 확대 운영(연 55회) 및 지방의회 맞춤형 교육자료 제작·배포를 통해 지방의회 운영의 청렴성 제고

### 【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 개요】

- 교육대상 : 55개 지방의회 의원 및 의회사무처/사무국/사무과 직원
  - ※ 수요조사('23.12월~'24.1월)를 통해 교육 대상 의회 선정 완료('24.1.22. 공문 발송)
- 교육장소 : 해당 지방의회 또는 의회가 지정하는 장소
- 교육내용 : 청렴 서약식(필수), 반부패·청렴 특강(필수) 등
- 교육방식 : 집합교육(2시간 이상)
- 강 사 료 : 청렴연수원에서 전액 지원

## □ 청렴교육 콘텐츠 보급

- 기관 자체 청렴교육 활용을 위해 청렴연수원 개발 이러닝 과정, 영상 콘텐츠 등 적극 배포

※ 청렴연수원 개발 최신 교육 콘텐츠 목록은 <참고자료 2>

- 청렴연수원 홈페이지\* 또는 국민권익위 유튜브 「권익비전」 활용

\* 청렴연수원 홈페이지 접속 → [청렴교육 자료] → [청렴교육 시청각자료]

- 콘텐츠 다운로드 가능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 필요시 공문서로 요청 (수신처 :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 교육운영과)

### [ 협조 요청 사항 ]

- 방문교육 운영 시 시설 준비 등 협조 요청(해당 기관)

- 고위직, 승진자, 신규자 등 대면교육 참여 협조(전 공공기관)

- 고충민원·권익개선·행정심판 등 권익구제 교육과정에 대한 소속 직원 수강 안내 등 홍보 요청(전 공공기관)

- 기관 자체 청렴교육 시 청렴연수원 개발 콘텐츠 및 청렴교육강사 적극 활용 요청(전 공공기관)

※ 청렴교육강사의 경우 ‘내부강사 양성과정’에 합격한 직원 또는 전문강사 (청렴연수원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 활용

### 3 민간협력을 통한 자율적 청렴역량 제고

- ◇ 부패리스크 예방 및 실효성 있는 관리를 위한 청렴윤리경영 실천 지원
- ◇ 청렴시민감사관 역량 강화를 통한 국민 기반의 자율적 청렴활동 지원

#### □ 공공기관 청렴윤리경영 실천 지원

- 청렴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운영 지원
  - 권익위는 각급 공공기관이 국내외 반부패 규범 강화, ESG 확대 등 경영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청렴윤리경영 CP\* 개발·지원
    - \* (청렴윤리경영 CP) 공기업 등이 경영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부패 리스크를 자율적으로 예방·탐지·개선하도록 하는 시스템 및 활동
    - ※ 권익위는 국내외 주요 기관의 CP를 분석하고 공통·핵심사항을 반영해 ‘공공기관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라인(개정본)’ 개발·배포('23.6월)
  - 각 행정기관에서도 산하 공공기관, 지방 공사·공단 등이 청렴윤리경영 CP 도입·운영을 통해 자율적·사전 예방적 부패 관리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및 독려 필요

#### □ 청렴시민감사관 역량 강화

- 청렴시민감사관 및 실무자 대상 소통·협력 강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워크숍 개최(중앙·지자체·공직유관 각 연 1회)
- 신규 도입 희망기관, 운영 미흡기관\* 등 대상 맞춤형 컨설팅 실시(수시)
  - \* (대상) '23년 청렴노력도 평가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지표 미흡기관 등
- 청렴시민감사관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한 제도 운영 지원 강화
  - ※ 명칭변경, 기능 및 권한, 자격요건 등 환경변화 반영

## [ 협조 요청 사항 ]

- 산하 공공기관, 지방 공사·공단 등의 청렴윤리경영 CP 자율 도입 추진 독려(기관 자율)
  - ※ ‘공공기관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라인’(’23.6월, 개정본) 참고  
: 위원회 홈페이지 정책·정보 → 대외협력 → 청렴윤리경영 자료실 게시
- 청렴시민감사관 워크숍 적극 참여 및 우수사례 발굴 협조(전 공공기관)
  - ※ 구체적인 일정 등은 추후 확정하여 별도 공문 시행 예정
- 청렴시민감사관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한 우수 운영기관 방문 협조(전 공공기관)
  - ※ ’23년 청렴노력도 우수 기관 중 선정하여 별도 공문 시행 예정
-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맞춤형 컨설팅 수요 제출(희망 기관)

- ◇ 평가모형 정교화, 결과활용 확대 등 평가제도 내실화 및 쌍방향 소통, 우수사례 확산 및 인센티브 강화로 각급 기관의 반부패 노력 적극 지원

## □ 평가 대상기관 확대를 통한 사각지대 없는 청렴수준 평가

- (대상기관) 지방의회 전수(243개) 및 부패 취약분야 기관에 대한 평가 실시 등 평가 대상기관 확대

※ ('23년) 628개 → ('24년) 약 700개 기관(잠정) 종합청렴도 평가 추진

- (신규) 전 지방의회에 대한 청렴도평가 실시('23년 92개→'24년 243개)를 통해 민생현장의 관행적 부패취약분야 개선 지원
- (중점·취약분야) 부패이슈가 발생한 기관, 고질적인 부패 취약분야\* 기관들을 추가 선정해 중점 평가 실시

\* '23년 종합청렴도 미흡기관, 부패사건 모니터링 결과, 대국민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부패수준 취약분야(예시: 건축·건설·주택·토지 등)를 활용

## □ 평가모형의 지속적 개선·보완으로 평가 타당성 제고

- (평가체계) 전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평가모형을 보완·정교화

※ (예시) 각 영역별 반영 비율, 영역내 평가 항목·지표 및 점수 체계 등

- (청렴체감도) 연도별 시계열 분석을 위해 설문의 큰 틀과 방향은 유지하되, 문항은 개선·간소화하여 응답자 부담 경감

※ 핵심설문 중심 구성, 활용성이 낮은 부가설문은 제외

- (청렴노력도) 실질적 청렴수준 개선효과가 있고, 각급기관의 자율적 반부패 시책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한 핵심지표 위주 평가 실시
  - ※ 지표 감축 등 평가지표를 개편한 '23년도 지표와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지표 수립·검토 중
  - ※ 적용지표(안)은 '24년 평가 기본계획 수립 시 공개(3월), 실시계획에 최종 확정·반영(5월)

## □ 평가의 수용성 향상을 위한 소통과 환류

- (소통 강화) 평가체계 개선방안·아이디어 의견수렴\*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한 기관 유형별 맞춤형 워크숍\*\* 개최 등 소통 활성화
  - \* 공공기관 대상 워크숍·공문 등 의견수렴(3~4월) 예정
  - \*\* 특히, 종합청렴도 평가 최초 실시하는 지방의회 유형 별도 실시 추진(상반기 중)
- (활용 확대) 각급기관의 우수시책 사례를 다양한 방식으로 발굴·전파, 반부패 정책 국외연수 등 유인 제공
  - ※ 우수기관 담당자 대상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교육 참여 기회 제공

## [ 협조 요청 사항 ]

### ○ '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후속조치(평가 대상기관)

- 평가 결과(등급) 기관별 홈페이지 공개실적 제출

※ '23년도 평가 대상기관 중 미제출 기관은 조속히 제출 요청

- '23년도 평가결과 분석 등을 통한 '24년도 반부패·청렴 추진계획 수립 및 기관장 주관 회의 등 실시

※ '24년도 평가지표는 '23년도 지표와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수립 검토 중

- 청렴도 우수기관 업무담당자 국외 반부패 교육훈련 수요조사 회신

※ 대상기관(약 20여 개)은 별도 공문 안내 예정

### ○ '24년도 평가 기본계획(3월) 관련 의견 제출(3월, 평가 대상기관)

- 종합청렴도 평가 워크숍(3~4월 예정) 적극 참여

### ○ '24년 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및 현지점검 등 협조(평가 대상기관)

- 기관별 반부패 추진계획, 청렴체감도 설문조사 자료 및 부패실태 자료 제출, 청렴노력도 실적 자료 등 평가자료 제출

※ 자료제출 내용 및 시기는 제출시기별로 별도 안내(공문 등) 실시 예정

※ 신뢰도 저해행위 등으로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도록 기준 확인 및 철저한 검수·확인 요청

- 평가를 위한 제출 자료 충실성, 신뢰도 저해행위 여부 등에 대한 현지점검 대상기관 선정 통보에 따른 점검 사항 협조(하반기)

※ 점검 대상, 추진 일정 및 방식 등 추후 확정하여 별도 공문 시행 예정

- ◇ 각급 공공기관의 비위면직자에 대한 취업제한제도 안내 등 철저
- ◇ 비위면직자 관련 정보의 청렴포털 자료입력 등 적극적인 협조 요청

##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안내 의무화

-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장은 재직 중 직무관련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및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공직자에게 취업제한제도를 의무적으로 안내
- 대상자에게 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운영지침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공문을 직접 교부 또는 등기 발송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제도 개요】

- 재직 중 직무관련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및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공직자였던 사람이 퇴직일 등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재직 당시의 업무관련 영리사기업체 등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

## □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대상자 관리 철저

- ‘공공기관 청렴포털시스템’에 비위면직자등 발생 현황 입력(연 2회)
  - ※ 상반기 입력 안내 : 2023년 하반기 부패공직자(비위면직자 포함) 현황자료 입력 요청(전 공공기관) 기 공문 시행(입력 기한 : '24.1.29.~3.13.)
- 권익위에서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위반여부 검토 요청(현장점검 포함) 및 위반자에 대한 후속조치\* 요구 시 적극 협조
  - \*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규정 위반자에 대한 권익위의 해임(취업해제조치의 강구) 요구 및 고발 요구

## [ 협조 요청 사항 ]

- 비위면직자등 당사자 대상 취업제한제도 안내(전 공공기관)
  -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안내(운영지침, 별지4호 서식)”에 따라 대상자에게 지체없이 취업제한제도 공문 안내
  - 대상자에게 안내한 관련 증빙자료(수령증 등)는 5년간 보관
    - ※ 취업제한제도를 미안내하여 취업제한 위반으로 해임·고발된 대상자가 퇴직 전 소속기관을 상대로 민원, 소 제기 등 문제제기 가능성 사전 예방
- 상·하반기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대상자를 기한내 청렴포털에 입력하고 관련 서류(징계처분사유서, 판결문, 안내 관련 증빙)도 빠짐 없이 입력(전 공공기관)
  - ※ 퇴직공직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거나 공무원연금·군인연금 급여 제한자로서 비위면직자등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명단 제출
- 공공기관 채용공고문 채용규정 제한사유에 ‘비위면직자등 취업 제한’ 관련규정을 명시하여 공고(전 공공기관)
- 퇴직 전 공공기관은 취업제한대상자가 재취업을 위해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시(시행령 제89조) 심사를 철저히 하고, 자체 판단이 곤란한 경우 권익위에 유권해석 받은 후 처리(전 공공기관)
- 권익위가 취업제한규정 위반여부 검토 요청시 사실관계 철저히 검증하여 해당 증빙자료와 함께 기한 내 제출하고, 취업실태 현장 점검 및 위반자 후속조치(해임·고발 요구) 적극 협조(전 공공기관)

## 1 신고사건 관리 강화

- ◇ 국민권익위와 조사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사건처리와 사후 관리 강화를 통해 대국민 신뢰 제고
- ◇ 공공기관의 청렴포털 관리 강화 및 반부패 정보 활용도 제고

### □ 신고사건에 대한 신속 조사 및 사후관리 강화

- **(이첩·송부사건)** 조사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법정 처리 기간 내에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관리 강화
  - 효율적인 신고사무 처리를 위해 신고사건을 이첩·송부 받은 조사기관은 조사 결과를 권익위에 조사 기한(60일) 내 통보
    - ※ 조사기관은 60일 이내 감사·수사 또는 조사를 종결해야 함(부패방지 권익위법 제60조 제1항)
  - 조사기관의 조사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기관방문을 통해 신속한 사건처리 독려
  - 해당 감독기관으로 송부한 사건의 경우 공정한 조사를 위해 해당기관으로 재송부하지 않고 감독기관에서 엄정 처리
- **(장기 미회신 사건)** 이첩·송부 후 6개월 이상 결과 통지가 없는 경우 반기별로 공문 발송 및 기관방문 등을 통해 조사 독려
  - ※ 권익위의 분기별 주기적 점검 시 협조
- **(자료공유 강화)** 조사·수사기관으로 이첩·송부한 사건의 조사 결과 자료(수사결과 보고서 등)에 대한 공유·협력 강화

## □ 청렴포털 콘텐츠 및 신고사건 관리 강화

-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손쉽게 정부의 반부패 정책과 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플랫폼인 청렴포털을 확산 중에 있음
  - ※ 청렴포털은 각급 기관 소관 반부패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 기관별 반부패 정보 공유, 협업 가능한 플랫폼
- 국민권익위는 기본 플랫폼을 제공하고, 각 기관은 반부패 정보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청렴포털 콘텐츠를 직접 등록·관리
  - 각 기관의 업무처리 현황에 맞게 청렴마당 신고제도 개요 및 보호·보상제도 운영여부 등 현행화 필요
    - ※ (예시) 보상제도를 운영하지 않음에도 보상신청이 가능하게 설정·운영하는 등 청렴포털 기본설정을 수정하지 않아 대국민 제공 정보 오류 발생
- 청렴포털에서 공공기관을 직접 선택하여 신고한 신고건은 해당 기관에서 처리 담당자를 신속히 지정하는 등 신고사건 관리 요망
  - 신고자는 신고사건 처리 단계별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므로 신속하게 담당자 지정 등 신고사건 관리 강화

## [ 협조 요청 사항 ]

- 이첩·송부 사건 법정 처리기한 내 적극 이행 협조(해당 기관)
  - ※ 조사 기한 내 처리 불가 시 권익위에 기한 연장 통보
- 이첩·송부사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점검시 협조(해당 기관)
  - ※ 반기별 이첩사건 점검 공문시행 시 자료 협조
- 해당 감독기관에서의 송부 사건 조사 처리 및 수사 결과 자료 제출 적극 이행 협조(해당 기관)
  - ※ 부패·공익침해행위 조사 관련 수사의견서 등 권익위에 제출 적극 협조
  - ※ 공공기관 청렴포털에 조사(수사) 결과 입력(업로드) 등 적극 이행
- 청렴포털 청렴마당을 통해 국민들이 반부패 정보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청렴포털 콘텐츠 수정·보완 실시(전 공공기관)
  - ※ 공공기관 청렴포털(ep.clean.go.kr) 공지사항 ‘청렴마당 콘텐츠 관리방법’ 참조
- 신고자가 청렴포털에서 공공기관을 직접 선택한 신고사건 관리 강화(해당 기관)
  - ※ 청렴포털을 이용하여 950개 공공기관에 부패·공익신고 가능('23.12.)

## 2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 지원

- ◇ 유형별·대상별 적극적인 교육 콘텐츠 개발, 교육방식 개편 등을 통해 반부패 정책·제도에 대한 이행력 제고

### □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통합 교육 실시

- **(교육방식 개편)** 기존의 부서별 개별적 교육으로 인한 일선기관의 피로도 및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반부패 업무에 대한 통합 교육
  - 신고제도 및 절차, 공공재정 환수,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등에 대한 기관별 실무 이해도 제고 및 안정적 운영 지원
- **(현장 맞춤형 교육)** 부패·공익신고 접수 기관별 유형·특성 등을 반영하여 6개 권역별 실무중심 교육 실시(3~7월)
  - 제도·법령 중심이 아닌 실제 업무 이해도 제고 및 기관별 현장 업무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빈발 질의, 해석 사례 등 위주로 편성

#### 【권역별 통합 교육 계획(안)】

- **(대상)**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민원·감사 업무 및 사업부서 실무자 등
- **(내용)** 부패·공익 신고 및 보호 실무 사례, 공공재정 환수제도 부정청구 빈발 사례 등, 청렴포털,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 **(지역)** 서울·경기, 대전·충청, 전라권 등 6개 권역

### [ 협조 요청 사항 ]

- 부패·공익신고, 공공재정환수 제도,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등에 대한 권역별 예방 교육 참석 협조(전 공공기관)
  - ※ 교육 시행 세부 계획은 권역별 별도 통보 예정(3~7월)

- ◇ 국민 상식에 맞는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촘촘한 보호·공정한 보상을 통해 신고 활성화 기반 강화

## □ 신고 활성화 제도 기반 강화

- **(법령 정비)** 부패·공익신고 및 부정청구 신고 보상·포상 수준이 동일해짐('23.12.시행령 개정)에 따라 하위 운영지침 등 신속 개선
  - ※ 포상금(최대5억원), 보상금 지급율(최고30%), 보상금 하한액(30만원) 수준 통일
- **(신고자 보호·지원 안내 주체 확대)** 신고자 보호·지원 사항의 안내 주체가 '권익위'에서 '공익신고 기관' 전체로 확대(「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국회 의결, '24.1.9)
- **(운영현황 실태조사)** 공공기관 등 대상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등에 대한 현황 조사(2~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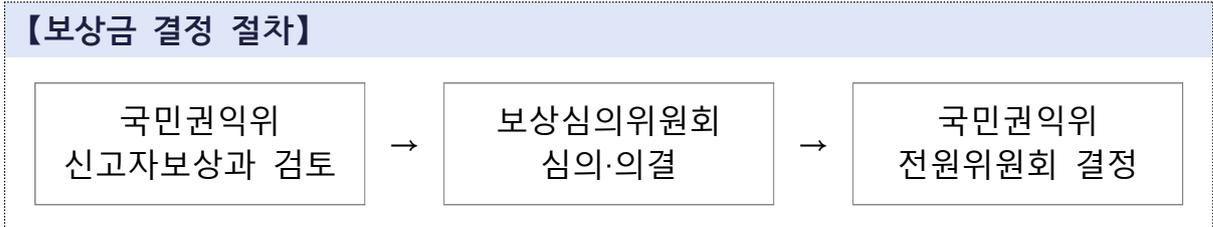
## □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이행 등 신고자 보호 철저

- **(비밀보장)** 신고 조사과정, 신고성 민원\* 처리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고자 비밀보장의무에 대한 주의 및 대응 강화
  - 신고자 비밀보장은 신고자 보호의 첫 단계로서 누구든지 신고자등(신고자, 협조자)임을 알면서 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그 인적사항이나 이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알리거나 공개·보도 불가
  - \* 국민신문고 등의 민원창구를 통해 접수되었으나 내용은 부패행위·공익신고에 해당하여 신고내용 관련 법령 및 신고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해야하는 건
- **(불이익조치 금지)** 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부당한 징계, 전보 등의 인사조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법령 준수
  - ※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분 등(「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제30조)

## □ 신고자 보상제도 운영의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

○ **(보상금)** 사건 검토단계부터 지급 보상금에 대한 상환까지 정교한 사건처리 체계를 구축

- 쟁점이 복잡한 주요 안전을 중점 심의 안전으로 지정하여 관련 논점 및 보상의 적정성 등을 사건 검토단계에서 꼼꼼히 점검



- 상환 대상 사건에 대한 정기적인 통보, 상환 지연기관에 대한 현지점검 등 상환액 수납을 위한 상시관리 실시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0조의2,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9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보상금 상환 의무 규정

○ **(포상금)** 추천 대상에 대한 사전검증 체계 제도화 및 서훈 추천· 자체 표창수여 등 포상방안 다각화

- 각급 공공기관의 추천과 권익위 자체 추천 사례를 대상으로 권익위 분과위원회에서 공익기여도 등을 사전 검증하여 포상의 공정성 강화
- 행정안전부 주관 「상훈법」에 따른 서훈 추천 및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선정·수여할 수 있는 '위원회 표창' 등 비금전적 포상 확대

※ '24년 부패·공익신고자 포상을 위한 위원장 표창 5점 추진 예정 및 적극적으로 포상을 추천한 기관담당자는 국민권익의 날 기념유공 포상 시상 예정

## [ 협조 요청 사항 ]

-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에 대한 정보 제공 방안 마련·시행(해당기관)
  - ※ 대상 : 조사·수사 기관, 공익침해행위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공단체
- 권익위 주관 공익신고 보호제도 운영현황 실태조사 관련 자료 제출 협조 요청(해당기관)
  - ※ 자체 운영규정 제정 현황, 책임관 지정 현황, 자체 보·포상금 운영 현황, 공익신고 사건 처리기간 현황, 공익신고 창구 설치 현황 등
- 기관 내부에서 신고자 비밀보장 및 불이익조치 금지 등 적극적인 신고자 보호조치 이행(모든 기관)
- 부패·공익신고 보·포상금, 구조금 지급 신청건에 대한 확인 및 자료제출 요청 시 협조 당부(해당기관)
  - ※ 신고서, 조사 결과 통지서, 처분 결정일자, 실제 환수내역, 불복구제절차 진행여부, 보·포상금 지급 여부 및 판단기준 등 사건처리에 필요한 자료
-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상환 기한준수 등 체계적 관리(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 상환 통보 사건 관리 및 예산편성 부서와의 협조를 통한 상환 처리(상시)
    - ※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세 체납처분 등에 따라 징수 가능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0조의2제3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제3항)
- 추천 요건에 부합하는 포상대상 사례 적극 추천(모든 기관)
  - 포상금 사례 추천 공문 발송(권익위) 시 기관별 사전검증을 통해 요건에 부합하는 우수 사례 추천 요청('24.하반기 예정)





---

## 기관의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사례

---



## □ 실태분석을 통한 전략도출

- (종합청렴도) '22년 종합청렴도는 2등급으로 우수하였으나, 내부 직원의 청렴체감도가 장관급 부처에 비해 저조
  - '업무지시 공정성' 등이 타 항목에 비해 매년 지속적 낮은 평가
- (자체진단\*) 갑질 경험, 인사제도 불만, 경직적 조직 문화, 과도한 업무, 시책에 대한 직원 이해부족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

\* 3년간 권익위 평가 내용, 내부 익명게시판, 노조, 설문조사 등 분석

⇒ 감사관실이 청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관련 부서(인사, 기획 등) 및 노조와 협력하여 내부만족도를 포함한 청렴도 제고방안을 마련

## □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방향

- 반부패 시책 공감대 형성과 함께 조직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갑질행위 등 부패 척결과 공감·소통·배려하는 조직문화 조성으로 청렴한 중기부 실현

👉 2023년도 반부패·청렴 시책 주요 방향 📌

반부패·청렴 시책에 대한 내부 공감대 형성하기!  
과거 부정적인 부패인식과 경험을 개선하기!  
직원에게 반부패·청렴 관련 업무의 피로감 주지 않기!  
본부·소속·산하기관이 함께 지원업무를 수행, 우리는 원팀!

## □ 주요 추진 내용 및 대표 사례

### ① 소통 부재를 해소하고 청렴 시책에 대한 내부 공감대 형성

- (찾아가는 간담회) 감사관이 직접 찾아가 반부패·청렴 관련 직원의 고충,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여 상·하 간 직접 소통을 실시하고,

- 간담회 전 반부패·청렴 담당이 시책 설명, 갑질 사례 및 기초 상담 등 수평적 질의·문답도 함께 진행



사전 면담



안내·교육



간담회

## ② 부정적 부패 인식과 경험을 개선

- (상호존중 캠페인) 수평적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상·하 및 동료간 서로 존중어를 사용하는 문화 안착(상호존중의 날 강화)
- 매월 구체적 구호 전파와 함께 갑질에 대한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

< 2023년 캠페인 전개 주요 내용 >

		<p>「부당한 업무지시」 대응 매뉴얼</p> <p>2023. 6.</p>	
<p>카드뉴스 배포(4월)</p>	<p>포스터 제작·배포(5월)</p>	<p>매뉴얼 제작·배포(6월)</p>	<p>X-배너 제작·배포(8월)</p>

- (인사 부정에 대한 인식 개선) 정기전보, 교류·과견 등 직원 생활과 밀접한 사안은 미리 공지하여 불확실성을 최소화
- 인사부서가 전체 소속기관(16곳) 대상 찾아가는 순회 인사설명회 개최하여 공정한 인사 운영에 대한 공감대 형성
- 또한 인사 고충 상담 정례화로 인사고충 신청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목요일\*을 지정, 순서에 따라 상담 후 고충 인정 시 반영 노력
- \* 고충 목소리를 듣는다는 취지를 살려 '목요일' 운영/온라인 신청·접수(지방청 유선상담)

## ③ 반부패·청렴에 대한 피로감을 없애고 흥미를 유발

- (청렴생활인 찾기) 과도한 업무로 지친 직원들을 위해 업무가 아닌 방법으로 직원들의 청렴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청렴 인식 제고

- 기관 내 숨어있는 '청렴생활인'을 다양한 방식\*으로 찾아 기관장 포상을 통해 공직 중요 가치인 '청렴'에 대한 인식 제고

\* 갑질예방 등 청렴활동에 모범, 투명한 업무처리 직원, 청렴교육 우수 평가자 등

- (청렴사이렌) 월별 부패요인을 찾아 청렴사이렌 발령과 돌발 청렴 퀴즈를 통해 선물을 제공함으로써 흥미를 유발하고 청렴 지식을 공유

< 2023년 전개한 청렴사이렌 월별 주제 >

월	청렴사이렌 내용	월	청렴사이렌 내용
1월	설명절 금품수수	2월	외부강의등 주요 내용
3월	정당한 경쟁과 부정한 청탁	4월	경조사 통지 제한
5월	상호존중 캠페인(일반)	6월	기프트콘 유의점
7월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8월	상호존중 캠페인(여름)
9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사항	11월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12월	음주 운전 근절		

#### ④ 우리는 원팀! 반부패·청렴 업무 공동 수행 및 변화 추진

- (청렴사회실천협의회) 소속·산하기관 모두가 청렴 과제를 발굴\*·수행하고 설문조사(환류)를 실시하여 기관 내·외 청렴도 향상에 기여

\* 청렴생활인찾기, 청렴사이렌, 청렴지킴이, 청렴계약서 상 이해충돌 방지조항 마련

#### □ 추진 성과 및 시사점

- (추진성과)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2년 연속 2등급 달성

- 직원에 대한 내부체감도가 전년 대비 대폭 상승(+9점)하여 전체 청렴체감도 등급이 1단계 상승(3→2등급)
- 특히, 내부만족도 향상 노력에 따라 갑질행위와 인사위반 등에 대한 부패인식이 큰폭으로 개선

- (시사점) 내부 불만 해소 노력이 전체 청렴체감도 향상에 영향

- 내·외부 청렴 체감도 향상을 위해 조직 내부 서로 공감·소통·배려하는 문화조성 등 직원 만족도 제고 노력 필요
- 반부패·청렴 정책이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에게 하나의 업무가 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 필요

## 2

# 질병관리청의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사례

## 1

### 질병관리청 주요 업무

□ (질병관리청) 공중보건 정책을 수립하고, 감염병·만성질환·건강위해 요인에 관한 연구 및 예방관리 정책 수행하는 기관

2024 비전

새로운 위기에는 신속하게 일상속 위험에는 탄탄하게

정책  
목표

보건안보 강국, 건강사회 실현을 위한

하루 100만명  
감염병 환자 대응  
전략 마련

대유행 100-200일 내  
백신·치료제  
신속개발 기반 구축

100세 시대  
생애주기별 건강한  
일상 보호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필수 예방접종 참여 등 **전 국민 협조와 실천**이 필수적이므로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민신뢰도는 중요**  
⇒ **청렴도 1등급 성과는 질병관리청 방역정책 성공의 교두보 역할**

□ (조직) 5국 3관 41과, 34개 소속기관

정원

○ (총 정원) 1,621명

- 본청 483명, 소속기관 1,138명

주요 소속기관

- 국립보건연구원
- 권역별 질병대응센터(5개)
- 국립검역소(13개)
- 국립결핵병원(2개)



## 2 질병관리청 청렴도 평가 결과

### □ 질병관리청 청렴도 결과 추이

구분	'21년	'22년	'23년
종합청렴도	-	1등급 91.2점	1등급 89.6점
청렴체감도	4등급 78.1점	1등급 89.5점	2등급 85.6점
청렴노력도	1등급 92.0점	2등급 93.7점	2등급 95.7점

## 3 청렴도 개선을 위한 전년도 주요 활동

### ① 조직 내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청렴 365일” 추진

 <p>청렴하게 마주 봄 0 봄재, 봄 사랑합니다. 1 현재, 봄 사랑합니다. 2 현재, 봄 사랑합니다. 3 봄재, 봄 사랑합니다.</p> <p>청렴한 가을 가을은 풍요와 수확의 계절입니다. 가을의 풍요를 나누고,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가을입니다. 가을의 수확을 나누고,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가을입니다.</p>	 <p>청렴고백(Go白) “말”은 사랑의 열매입니다. 말을 잘 하면 사랑의 열매가 익어갑니다.</p> <p>「청렴GO白」 소식지 제작</p>	 <p>청렴컨텐츠 공모전 2023.7.5(수) ~ 7.23(화)</p> <p>공모전 / 전시회</p>
<p>사계절 청렴 화면보호기</p>	<p>「청렴GO白」 소식지 제작</p>	<p>공모전 / 전시회</p>
 <p>2023년 「찾아가는 청렴 컨설팅」 2023년 찾아가는 청렴 컨설팅</p> <p>찾아가는 청렴 컨설팅</p>	 <p>2023년 청렴마일리지 우수부서 청렴마일리지 우수기관</p> <p>청렴마일리지 우수기관</p>	 <p>청렴퀴즈 청렴퀴즈 즐기(매월)</p> <p>청렴퀴즈 즐기(매월)</p>
<p>찾아가는 청렴 컨설팅</p>	<p>청렴마일리지제도 운영</p>	<p>청렴퀴즈 즐기(매월)</p>

## 2 코로나19 대응 공공재정 부정수급 예방·근절 노력 추진

- **(배경)** <sup>[내부]</sup>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 확대\* 및 부정수급 의심 사례(코로나19 지원금 허위 청구) 증가, <sup>[외부]</sup>국가보조금 지원의 투명성 및 집행 적정성 제고를 위한 관리체계 전면 재정비 지시(대통령, '22.12월)

\* (보조금 예산 규모) '21년 5,160억원 → '22년 1조 4,442억원, 2.8배 확대

- **(추진내용)** ①보조금 집행점검 추진단 구성('23.1월) ②민간단체 보조사업 전수조사('23.3월), ③코로나19 생활지원비 부정 청구 사례에 대한 자체 조사 및 정산, ④재발 방지를 위한 보조금 청구·정산 시스템 개선

[ 보조사업 집행점검 및 후속 조치 ]

추진단 구성 및 계획 수립	코로나19 대응 관련 보조금 조사 및 점검 실시	후속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금 집행점검 추진단 구성(12명)</li> <li>• 사전 회의를 통한 기초 조사 및 점검 사항 도출</li> <li>•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 개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개 민간보조사업* 대상 실지 감사 추진 * (대상) 11개 기관, (예산규모) 8,417백만원</li> <li>• 부처-지자체 매칭 사업* 현장점검 실시 * (대상) 68개 기관, (예산규모) 32,871백만원</li> <li>•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중복 지급 사례 자체 점검</li> <li>• 부정수급 의심 신고 건에 대한 조사 실시(3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25건 처분 요구</li> <li>• 담당자 교육 정례화</li> <li>• 각종 부정수급 방지 시스템 구축</li> </ul>
'23.1월	'23.2~4월	'23.9월

- **(성과)** **부당집행 환수 및 시스템 마련** 코로나19 보조사업 전반을 점검하여 부당한 집행금액 환수 및 시스템 개선, 지속 관리를 위한 신고채널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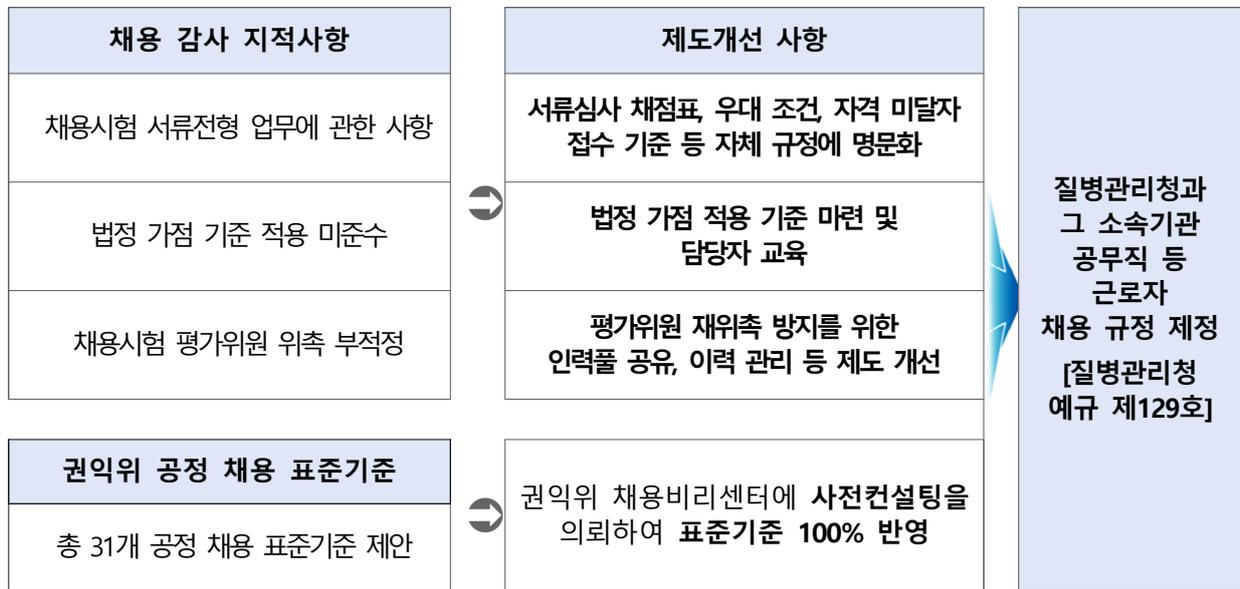
주요 사업별	시스템 개선 사항	
코로나19 생활지원금 부당수급	이중지급 방지 시스템 구축	
민간단체 보조금 부당수급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시스템 구축	

### 3 채용비리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비공무원 채용 규정 제정

- **(배경)** <sup>내부</sup>질병청은 연구 중심 기관으로 비공무원의 비중(약 30%)이 높고, 개청으로 신규 채용 수요가 증가(현원 '20년 1,606명 → '22년 2,263명), <sup>외부</sup>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출범(권익위, '23.1월)
- **(추진내용)** ①비공무원 채용실태 특정감사 실시('23.8월) ②비공무원 공정 채용 관련 자체 규정 제정('23.9월) ③채용 관련 자체 감사 정례화(2년 주기)

#### [ 비공무원 채용 공정성 강화 ]

##### ▶ 비공무원 채용 과정 특정감사 및 채용기준 마련



##### ▶ 내부통제 강화

채용 감사 정례화(2년 주기)	투명성 강화(면접점수 공개방안 마련)	채용비리 신고 채널 운영
------------------	----------------------	---------------

- **(성과) 공정채용 기반 마련 및 감시 기능 강화** ①통일된 채용기준을 적용하여 채용비리 사전 예방 및 ②채용감사 정례화와 피해자 구제 등 사후 조치 기능 강화로 채용 공정성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



---

# 참 고 자 료

---



연번	기관명		연번	기관명	
1	부산광역시	기장군	44	전라남도	목포시
2	대구광역시	군위군	45	전라남도	여수시
3	경기도	고양시	46	전라남도	광양시
4	경기도	성남시	47	전라남도	구례군
5	경기도	부천시	48	전라남도	보성군
6	경기도	남양주시	49	전라남도	장흥군
7	경기도	안양시	50	전라남도	강진군
8	경기도	평택시	51	전라남도	해남군
9	경기도	시흥시	52	전라남도	영암군
10	경기도	광주시	53	전라남도	함평군
11	경기도	군포시	54	전라남도	영광군
12	경기도	하남시	55	경상북도	포항시
13	경기도	오산시	56	경상북도	김천시
14	경기도	양주시	57	경상북도	구미시
15	경기도	구리시	58	경상북도	영천시
16	경기도	의왕시	59	경상북도	상주시
17	경기도	양평군	60	경상북도	문경시
18	경기도	동두천시	61	경상북도	경산시
19	경기도	가평군	62	경상북도	의성군
20	경기도	연천군	63	경상북도	청송군
21	충청북도	제천시	64	경상북도	영양군
22	충청북도	보은군	65	경상북도	고령군
23	충청북도	옥천군	66	경상북도	성주군
24	충청북도	영동군	67	경상북도	칠곡군
25	충청북도	진천군	68	경상북도	예천군
26	충청북도	음성군	69	경상남도	진주시
27	충청남도	천안시	70	경상남도	통영시
28	충청남도	아산시	71	경상남도	사천시
29	충청남도	서산시	72	경상남도	김해시
30	충청남도	논산시	73	경상남도	밀양시
31	충청남도	계룡시	74	경상남도	양산시
32	충청남도	금산군	75	경상남도	합안군
33	충청남도	부여군	76	경상남도	창녕군
34	충청남도	청양군	77	경상남도	남해군
35	충청남도	예산군	78	경상남도	하동군
36	전라북도	군산시	79	경상남도	산청군
37	전라북도	익산시	80	경상남도	거창군
38	전라북도	남원시	81	강원도	원주시
39	전라북도	김제시	82	강원도	태백시
40	전라북도	완주군	83	강원도	속초시
41	전라북도	진안군	84	강원도	삼척시
42	전라북도	무주군	85	강원도	영월군
43	전라북도	임실군	86	강원도	양양군

연번	주요 내용	개발 시기
1	 <b>【청렴 종합병원】 - 영상물</b> -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를 다양한 에피소드로 각색하여 법령 이해도 제고 (총 4편, 각 3분)	'23년
2	 <b>【박청렴 패밀리가 떴다】 - 영상물</b> - 반부패 법령 위반 사례를 시트콤 형식으로 표현하여 일상 속 청렴 실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23년
3	 <b>【매너가 오피스를 만든다】 - 영상물</b> - 직장 내 부패 유형인 '갑질' 사례를 다룬 브이로그(V-log) 형태의 영상물을 통해 갑질 근절 필요성 강조	'23년
4	 <b>【꼭 알아야 하는 공정채용 절차】 - 이러닝</b> - 채용 관련 법령 및 채용 절차별 유의사항, 공정채용 위반 사례 등을 설명하여 공정채용 문화 확산(4차시)	'23년
5	 <b>【현장 공직자를 위한 사례로 알아보는 청렴교육】 - 이러닝</b> - 경찰·소방·교정공무원, 군인 등 현장공직자를 위해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	'22년
6	 <b>【이해충돌방지법 탐구생활】 - 영상물</b> - 이해충돌방지법의 핵심인 10개 행위 기준을 에피소드를 통해 쉽게 설명하여 이해충돌방지법 이해도 제고	'22년
7	 <b>【비슷하지만 다른 나라 ①, ②】 - 영상물</b> - 이름도 비슷하고 인접한 두 국가(파라과이, 우루과이)의 청렴도가 크게 차이 나는 원인을 역사적 배경을 통해 설명	'22년
8	 <b>【부패로 큰코다친 나라들, 뇌물과 부패방지법】 - 영상물</b> - 나라를 뒤흔든 세계 각국의 희대의 부패사건을 소개하고, 이에 대응한 해외의 반부패 입법 사례 소개	'22년
9	 <b>【청렴 북 콘서트】 - 영상물</b> - 문학, 심리학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청렴 관련 도서의 내용을 소개하여 청렴을 쉽게 이해(총 5편)	'21년

월	과정명	기수	교육인원	교육일자
2월 (2회)	고충민원처리 역량강화 과정	1기	40명	2.20.(화)~2.21(수)
	청렴교육 전문강사 보수교육(온라인)	1기	200명	2.22.(목)
3월 (11회)	신규자 과정(공무원·공직유관단체 직원)	1기	40명	3.4.(월)~3.8.(금)
	승진자 과정(공무원)	1기	40명	3.5.(화)
	청렴교육 강사양성 전문과정(정책·법령)	1기	50명	3.11.(월)~3.14.(목)
	내부강사 양성과정(온라인)	1기	300명	3.19.(화)~3.21.(목)
	청렴윤리경영 담당자 과정	1기	40명	3.19.(화)~3.21.(목)
	청렴리더십(고위직) 과정	1기	40명	3.20.(수)
	권익개선 역량강화 과정	1기	40명	3.21.(목)~3.22.(금)
	계약 담당자 과정	1기	40명	3.25.(월)
	고충민원처리 역량강화 과정	2기	40명	3.26.(화)~3.27.(수)
	청렴교육 전문강사 보수교육	2기	70명	3.28.(목)
	행정심판 역량강화 과정	1기	40명	3.29.(금)
4월 (10회)	청렴윤리경영 관리자 과정	1기	40명	4.1.(월)~4.2.(화)
	청렴감성지수 향상과정	1기	40명	4.3.(수)~4.5.(금)
	청렴윤리경영 최고관리자 과정	1기	40명	4.4.(목)
	승진자 과정(공직유관단체 직원)	2기	40명	4.9.(화)
	공직자 청렴역량 심화과정	1기	40명	4.15.(월)~4.19.(금)
	청렴리더십(고위직) 과정	2기	40명	4.17.(수)
	신규자 과정(공직유관단체 직원)	2기	40명	4.22.(월)~4.23.(화)
	내부강사 양성과정(온라인)	2기	300명	4.23.(화)~4.25.(목)
	청렴윤리경영 담당자 과정	2기	40명	4.23.(화)~4.25.(목)
	권익개선 역량강화 과정	2기	40명	4.25.(목)~4.26.(금)

월	과정명	기수	교육인원	교육일자
5월 (12회)	청렴리더십(고위직) 과정	3기	40명	5.2.(목)
	승진자 과정(공무원)	3기	40명	5.8.(수)
	청렴감성지수 향상과정	2기	40명	5.8.(수)~5.10.(금)
	전문과정 합격자 강의역량 향상과정	1기	30명	5.13.(월)~5.14.(화)
	계약 담당자 과정	2기	40명	5.16.(목)
	신규자 과정(공무원)	3기	40명	5.20.(월)~5.21.(화)
	청렴윤리경영 담당자 과정	3기	40명	5.21.(화)~5.23.(목)
	청렴교육 전문강사 보수교육	3기	70명	5.22.(수)
	권익개선 역량강화 과정	3기	40명	5.23.(목)~5.24.(금)
	고충민원처리 역량강화 과정	3기	40명	5.28.(화)~5.29.(수)
	청렴리더십(고위직) 과정	4기	40명	5.29.(수)
	교육행정직.교직원 과정	1기	40명	5.31.(금)
6월 (9회)	승진자 과정(공직유관단체 직원)	4기	40명	6.4.(화)
	내부강사 양성과정(온라인)	3기	300명	6.11.(화)~6.13.(목)
	청렴윤리경영 관리자 과정	2기	40명	6.11.(화)~6.12.(수)
	인사 담당자 과정	1기	40명	6.13.(목)
	신규자 과정(공직유관단체 직원)	4기	40명	6.17.(월)~6.18.(화)
	청렴윤리경영 담당자 과정	4기	40명	6.18.(화)~6.20.(목)
	청렴리더십(고위직) 과정(세종)	5기	40명	6.19.(수)
	권익개선 역량강화 과정	4기	40명	6.20.(목)~6.21.(금)
	행정심판 역량강화 과정	2기	40명	6.28.(금)
7월 (13회)	교육행정직.교직원 과정	2기	40명	7.2.(화)
	청렴윤리경영 최고관리자 과정	2기	40명	7.4.(목)
	공직자 청렴역량 심화과정	2기	40명	7.8.(월)~7.12.(금)
	승진자 과정(공무원)	5기	40명	7.9.(화)
	신규자 과정(공무원)	5기	40명	7.15.(월)~7.16.(화)
	고충민원처리 역량강화 과정	4기	40명	7.16.(화)~7.17.(수)
	청렴리더십(고위직) 과정	6기	40명	7.17.(수)
	내부강사 양성과정(온라인)	4기	300명	7.16.(화)~7.18.(목)
	청렴윤리경영 담당자 과정	5기	40명	7.23.(화)~7.25.(목)
	계약 담당자 과정	3기	40명	7.25.(월)
	청렴윤리경영 관리자 과정	3기	40명	7.29.(월)~7.30.(화)
	청렴교육 전문강사 보수교육	4기	70명	7.30.(화)
	청렴감성지수 향상과정	3기	40명	7.31.(수)~8.2.(금)
8월 (4회)	청렴교육 강사양성 전문과정(정책.법령)	2기	50명	8.5.(월)~8.8.(목)
	승진자 과정(공직유관단체 직원)	6기	40명	8.6.(화)
	청렴리더십(고위직) 과정	7기	40명	8.7.(수)
	신규자 과정(공직유관단체 직원)	6기	40명	8.12.(월)~8.13.(화)

월	과정명	기수	교육인원	교육일자
9월 (12회)	청렴윤리경영 관리자 과정	4기	40명	9.2.(월)~9.3.(화)
	고충민원처리 역량강화 과정	5기	40명	9.3.(화)~9.4.(수)
	내부강사 양성과정(온라인)	5기	300명	9.3.(화)~9.5.(목)
	청렴리더십(고위직) 과정	8기	40명	9.4.(수)
	인사 담당자 과정	2기	40명	9.5.(목)
	권익개선 역량강화 과정	5기	40명	9.5.(목)~9.6.(금)
	공직자 청렴역량 심화과정	3기	40명	9.9.(월)~9.13.(금)
	승진자 과정(공무원)	7기	40명	9.10.(화)
	청렴윤리경영 담당자 과정	6기	40명	9.24.(화)~9.26.(목)
	청렴리더십(고위직) 과정(서울)	9기	40명	9.25.(수)
	신규자 과정(공무원)	7기	40명	9.26.(목)~9.27.(금)
행정심판 역량강화 과정	3기	40명	9.27.(금)	
10월 (8회)	청렴교육 전문강사 보수교육	5기	70명	10.1.(화)
	승진자 과정(공직유관단체 직원)	8기	40명	10.8.(화)
	청렴윤리경영 담당자 과정	7기	40명	10.15.(화)~10.17.(목)
	청렴리더십(고위직) 과정	10기	40명	10.16.(수)
	신규자 과정(공직유관단체 직원)	8기	40명	10.21.(월)~10.22.(화)
	권익개선 역량강화 과정	6기	40명	10.24.(목)~10.25.(금)
	내부강사 양성과정(온라인)	6기	300명	10.29.(화)~10.31.(목)
	청렴감성지수 향상과정	4기	40명	10.30.(수)~11.1.(금)
11월 (9회)	승진자 과정(공무원·공직유관단체 직원)	9기	40명	11.4.(월)
	청렴윤리경영 담당자 과정	8기	40명	11.5.(화)~11.7.(목)
	청렴리더십(고위직) 과정	11기	40명	11.6.(수)
	전문과정 합격자 강의역량 향상과정	1기	30명	11.11.(월)~11.12.(화)
	계약 담당자 과정	4기	40명	11.14.(월)
	신규자 과정(공무원)	9기	40명	11.18.(월)~11.19.(화)
	고충민원처리 역량강화 과정	6기	40명	11.19.(화)~11.20.(수)
	교육행정직·교직원 과정	3기	40명	11.22.(금)
	청렴리더십(고위직) 과정	12기	40명	11.27.(수)
12월 (4회)	신규자 과정(공무원·공직유관단체 직원)	10기	40명	12.2.(월)~12.3.(화)
	승진자 과정(공무원·공직유관단체 직원)	10기	40명	12.4.(수)
	행정심판 역량강화 과정	4기	40명	12.6.(금)
	청렴교육 전문강사 보수교육	6기	70명	12.10.(화)



---

**개**

**임**

---



협 조 사 항		일 정	대상기관
<b>1. 공공기관 채용 과정의 부패·불공정 관행 근절</b>			
①	'24년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실시	2~10월	전 공공기관
②	'24년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감독기관별 결과 회신	10월 말	전 행정기관
<b>2. 공공재정 부정수급 실태 관리 강화</b>			
①	'23년 하반기 처분 대상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 실태관리 점검	상반기	전 공공기관
②	후속점검 자료요청 시, 적극 협조	수시	해당 기관
③	기관별 자체점검	~9월	전 공공기관
④	국조실 주관 보조금 감사결과에 따른 제재조치 이행실태 월별 점검	매월	해당 기관
⑤	'정부지원금 집중신고기간' 운영 적극 홍보	상반기	전 공공기관
⑥	취약분야 합동점검	연중	해당 기관
⑦	권익위외 타기관 신고자에게 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 포상금 지급기준 대상자를 권익위에 적극 추천	연중	전 공공기관
<b>3. 지방 현장의 고착화된 부패취약분야 개선</b>			
①	지방의회 반부패 행위규범 실태점검 협조	상반기	해당 지방의회
②	종합청렴도 평가 실시 협조	수시	전 공공기관
③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 기관 의견조회 협조	5월 예정	86개 시·군 지방의회
④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이행 협조	수시	해당 지자체
⑤	지방의회의원 및 소속 공직자 청렴교육 적극 이수	수시	전 지방의회

협 조 사 항		일 정	대상기관
<b>4. 생활 속 규범으로 반부패 행위규범 내재화</b>			
<b>[1]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시행</b>			
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개정	~12월	전 공공기관
②	이해충돌 방지제도 취약분야 집중 점검 협조	상반기	해당기관
③	이해충돌방지법 법정 의무 교육 이행	연중	전 공공기관
④	이해충돌방지법 권역별 설명회 참여	9월(예정)	전 공공기관
⑤	자체 점검 등 이행력 제고를 위한 노력 전개	연중	전 공공기관
⑥	이해충돌 방지제도 실태조사 협조	9~12월	전 공공기관
⑦	법 위반행위 신고 사건 조사·처리 협조	연중	해당기관
⑧	제도운영 관련 개선 필요 사항 등 의견 공유	연중	전 공공기관
<b>[2] 청탁금지법의 규범력 제고</b>			
①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 실태점검 협조	2월~	전 공공기관
②	청탁금지법 제도 운영 설명회 참석	2, 9월	전 공공기관
③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홍보자료 활용 및 전파 협조	수시	전 공공기관
<b>[3] 공직자 행동강령 내실화</b>			
①	기관별 자체 행동강령 제·개정사항 제출	제·개정 완료시	전 공공기관
②	행동강령위반 신고사건 조사, 행동강령 실태점검시 자료 제출·현지점검 등 협조	연중	전 공공기관
③	소속 공직자 대상 갑질 금지 등 행동강령 주요 행위기준에 대한 자체 행동강령 교육 적극 실시	연중	전 공공기관
④	부패취약시기 등 기관별 자체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강화	연중	전 공공기관
⑤	기관별 행동강령 위반자 현황 및 운영실적 자료 입력	1~3월 7~9월	전 공공기관

협 조 사 항		일 정	대상기관
<b>5. 제도개선을 통한 부패·불공정 요인 해소</b>			
①	제도개선 관련 자료제출 요청 및 제도개선 방안 의견조회 시 기한 내 제출	연중	전 공공기관
②	제도개선 실태조사, 이행점검 등 업무 적극 협조	연중	전 공공기관
<b>6. 교육·협력을 통한 공직사회 자율적 청렴역량 강화</b>			
<b>[1] 법정 청렴교육 관리 내실화</b>			
①	'23년도 부패방지교육 이행 실적 제출	~2월	전 공공기관
②	청렴교육(법정의무교육) 실시 및 참여 협조	연중	전 공공기관
③	부패방지교육 운영 지침 온라인 설명회 참여 협조	3월 중	전 공공기관
④	'23년도 부패방지교육 실적에 대한 현장점검 시 협조	3월~6월	해당기관
<b>[2] 분야별·대상별 교육 과정 운영</b>			
①	방문교육 운영 시 시설 준비 등 협조 요청	해당 교육일	해당 기관
②	고위직·승진자·신규자 등 대면교육 참여 협조	상시	전 기관
③	권익구제 교육과정 직원 수강 안내 등 홍보 요청	상시	전 기관
④	기관 자체교육 시 청렴연수원 콘텐츠 및 청렴교육 강사 적극 활용 요청	상시	전 기관
<b>[3] 민간협력을 통한 자율적 청렴역량 제고</b>			
①	산하 공공기관, 지방 공사·공단 등의 청렴윤리경영 CP 자율 도입 추진 독려	수시	기관 자율
②	청렴시민감사관 워크숍 적극 참여 및 우수사례 발굴 협조	연1회	전 공공기관
③	청렴시민감사관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한 우수 운영기관 방문 협조	상반기	해당 기관
④	청렴시민감사관 맞춤형 컨설팅 수요 제출	수시	해당 기관

협 조 사 항		일 정	대상기관
<b>7.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를 통한 청렴도 향상 촉진</b>			
①	'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후속조치	~ 5월	평가 대상기관
②	'24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의견제출	~ 3월	평가 대상기관
③	'24년도 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및 현지점검 협조	하반기	평가 대상기관
<b>8.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운영 내실화</b>			
①	비위면직자등 발생시 대상자에게 취업제한제도 안내	연중	전 공공기관
②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대상자 청렴포털 입력 철저	연중	전 공공기관
③	채용공고 시 비위면직자등 채용제한사유 명시	수시	전 공공기관
④	퇴직 전 공공기관 취업제한 여부 확인 당부	수시	전 공공기관
⑤	취업제한규정 위반여부 자료제출 및 후속조치 협조	연중	전 공공기관
<b>9. 공정·신속한 신고사건 조사 및 관리</b>			
<b>[1] 신고사건 관리 강화</b>			
①	이첩·송부사건 법정 처리기한 내 처리	연중	해당 기관
②	이첩·송부사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점검시 협조	수시	해당 기관
③	조사관련 자료제출에 적극 협조	수시	해당 기관
④	청렴포털 콘텐츠 수정·보완	연중	전 공공기관
⑤	공공기관의 청렴포털로 신고된 사건 관리 강화	연중	해당 기관
<b>[2]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 지원</b>			
①	부패·공익신고, 공공재정환수제도, 비위면직자 취업 제한 제도 등에 대한 권역별 예방 교육 참석	3~7월	전 공공기관

협 조 사 항		일 정	대상기관
<b>10. 국민이 공감하는 합리적인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b>			
①	공익신고 보호제도 운영현황 실태조사 자료 제출 협조	상반기	해당 기관
②	신고자 보호조치 적극 이행	연중	전 공공기관
③	보·포상금, 구조금 지급 신청 관련 자료 제출 요청시 협조	수시	해당 기관
④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상환 통보 사건 관리	연 2회	해당 기관
⑤	추천 요건에 부합하는 포상 대상 사례 적극 추천	하반기	해당 기관

부서명	성명	업무명	전화번호	팩스
채용비리 통합신고 센터	김종혁	채용실태 전수조사, 제도개선 등	044)200-7127	044) 200-7964
	배영준	채용실태 전수조사, 제도개선 등	044)200-7711	
	백소망	공정채용 전문교육, 사규 컨설팅 등	044)200-7294	
	최무선	채용비리 신고 상담, 조사·처리 등	044)200-7291	
공공재정 환수관리과	서현우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	044)200-7644	044) 200-7977
	조강현	취약분야 집중점검, 후속점검	044)200-7582	
	고채림	집중신고기간 운영, 교육·컨설팅	044)200-7643	
	김선일	이행실태관리 점검	044)200-7650	
	김시준	청렴노력도 평가	044)200-7646	
부패영향 분석과	박세희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044)200-7656	044) 200-7941
청렴정책 총괄과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파트)	김희리	법령정비, 실태조사 및 유권해석	044)200-7674	044) 200-7939
	조수연	교육·홍보, 설명회 및 유권해석	044)200-7679	
	권나라	교육·홍보, 설명회 및 유권해석	044)200-7681	
청탁금지 제도과	한세근	청탁금지제도 업무 총괄	044)200-7703	044) 200-7944
	권문택	청탁금지법 제도 운영 설명회	044)200-7704	
	정나리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홍보	044)200-7708	
	박선미	청탁금지법 운영 실태점검	044)200-7706	
	오정헌	청탁금지법 운영 실태점검	044)200-7707	

부서명	성명	업무명	전화번호	팩스
행동강령과	정철우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 운영	044)200-7675	044) 200-7942
	유어진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 운영	044)200-7670	
	이종윤	공직자 행동강령 이행점검	044)200-7677	
	고명관	공직자 행동강령 이행점검	044)200-7683	
	서정민	공직자 행동강령 이행점검 행동강령 위반자 현황 및 운영실적 자료 입력	044)200-7685	
제도개선 총괄과	전이슬	제도개선 업무 총괄	044)200-7216	044) 200-7921
	김종희	제도개선 권고과제 사후관리	044)200-7219	
청렴정책 총괄과	박종하	부패방지교육 제도·운영, 교육실적 점검 및 관리	044)200-7616	044) 200-7939
청렴연수원	구교전	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 고위직(청렴리더십) 과정	043)901-6132	044) 200-7973
	조효민	청렴라이브(Live)	043)901-6145	
	김영일	승진자 과정	043)901-6131	
	성장미	신규자 과정 인사·계약담당자 과정	043)901-6133	
	배유진	공직자 청렴역량 심화과정 전문강사 양성 및 관리	043)901-6149	
	나은정	전문강사 양성 및 관리 교육행정·교직원 과정	043)901-6143	
	김성래	내부강사 양성과정	043)901-6134	
	조윤서	청년인턴 교육과정 운영 교육콘텐츠 공유 등 관리	043)901-6148	
	김준형	권익개선 역량강화 과정	043)901-6118	
	김혜윤	이러닝 운영, 코스웨어 공유 고충민원·행정심판 역량강화 과정	043)901-6121	
민간협력 담당관실	손정아	청렴윤리경영 CP 운영	044-200-7164	044) 200-7917
	이지훈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지원	044-200-7163	

부 서 명	성 명	업 무 명	전화번호	팩스
청렴조사 평가과	김혜진	종합청렴도 평가	044)200-7632	044) 200-7940
	김일문	종합청렴도 평가	044)200-7633	
	이하윤	종합청렴도 평가	044)200-7635	
	연나영	종합청렴도 평가	044)200-7636	
	황인준	종합청렴도 평가	044)200-7638	
	안영인	종합청렴도 평가	044)200-7637	
	윤종선	종합청렴도 평가	044)200-7639	
심사기획과	방경아	부패신고 제도 운영·기획	044)200-7694	044) 200-7943
	김남행	청렴포털 운영·관리	044)200-7689	
	이태완	청렴포털 운영·관리	044)200-7698	
	박종혁	이첩사건 사후관리	044)200-7692	
	우은주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운영	044-200-7690	
	한수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운영	044-200-7696	
부패심사과	나조운	부패 신고사건 조사	044)200-7728	044) 200-7946
	모형오	부패 신고사건 조사	044)200-7720	
보호보상 정책과	문호준	부패·공익 신고 관련 법령 정비	044)200-7753	044) 200-7948
	나현성	부패·공익 신고 관련 법령 정비	044)200-7754	
	서지만	부패·공익신고 관련 맞춤형 교육	044)200-7757	
	조은수	공공기관 대상 보호제도 실태조사	044)200-7750	
신고자 보호과	양은경	신고자 보호사건 관련 평가	044)200-7779	044) 200-7947
	정병학	신고자 보호사건 처리 안내	044)200-7773	
신고자 보상과	이주현	신고 보상금 상환, 포상 추천 등	044)200-7738	044) 200-7947